

정책건의

중견기업 성장저해 규제과제

2014. 5.

《 목 차 》

I. 입 지	1
1. 산업기술단지 내 도시형공장 설립 규제 완화	1
2. 자연보전권역 공장신설 및 증설 규제 완화	3
3. 계획관리지역에 인접한 생산관리지역 용도변경 규제 완화	5
4. 농업진흥지역 해제 업무처리지침 하달	7
5. 농지전용 규제 완화	9
6. 국가산업단지 내 토지용도 규제 완화	11
7.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심의 일원화	13
8. 고압가스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설치기준 일원화	15
9. 가축사육 제한거리 규제 일원화	17
II. 노 동	18
1. 통상임금 부담 완화	18
2. 근로시간단축 노·사 자율에 맡겨야	21
3. 임금피크제 법제화	24
4.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26
5.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선	28
6.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제한요건 완화	30
III. 세 제	32
1. 중견기업, 계열사 간 거래 과세부담 완화	32
2.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상향	35
3.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 신설 및 화학안전시설 공제대상 포함 ..	37
4.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 신설	40
5.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확대	42
6. 주식명의신탁 실명전환시 과세 제외 및 자진신고제 도입	44
7. 설당 할당관세 물량 확대 및 관세율 인하	46
8. 버터에 대한 양허관세율 인하	48
9. 치킨 양념첨가물에 대한 부가세 면제	50

IV. 금 융	52
1. 주채무계열제도 선정기준 완화	52
2. 기술보증기금 연대보증제도 폐지	55
3.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제도 폐지	57
4.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수수료 과세 제외	59
5. 환변동보험, 중견기업 한도 상향 조정	61
6.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의무 완화	66
7.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사전신고의무 완화	68
8. 신고의무 위반시 외국환거래정지 처분 완화	70
V. 공정거래·판로	72
1. 중견기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대상에서 제외	72
2. 하도급 대금지급 기간단축으로 중견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	75
3.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완화	76
4. 가맹계약 갱신 거절사유 완화	81
5. 블랙컨슈머에 대한 피해구제제도 마련	83
VI. 인증·검사	85
1. 창세트 부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인증방식 개선	85
2. 방폭 전기기계 안전인증 규제 완화	87
3. 축산물 친환경 인증 통합	89
4. 가금류 도축 검사공영화 제도 개선	92
5. 도축 검사원 자격기준 폐지	95
VII. 주택·건설	97
1. 보증기관의 면책채권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97
2.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발주시 중복성 심사 일원화	99
3.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중복규제 완화	100

VIII. 기 타	102
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정의 명확화	102
2. 방화구획 설치 완화 규정 구체적 명시	105
3. 관계기업제도 적용 완화	108
4. 에너지 사용제한 규제 완화	110
5. 선원 승하선 공인시 민간보험 가입자 차별대우 시정	112
6. 수출품목에 대한 법규준수도 평가기준 완화	113
7. 축사용 가스난방기기 수입절차 간소화	116
8. 초기 중견기업, 지방자치단체 육성기금 지원 확대	118
9. 부산신항만 부두내 벌크선 접안 부두 설치	120

요 약

연번	과제명	현황 및 문제점	건의내용
I. 입 지			
1	산업기술단지 내 도시형공장 설립규제 완화	- 산업기술단지 내 도시형공장은 중소·벤처기업만 설립할 수 있음 - 중견기업은 도시형공장 설립규제로 공장설립이 어려워 투자활동이 위축	- 중견기업도 산업기술단지 내 도시형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2	자연보전권역 공장신설 및 증설 규제 완화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공장 신·증설 또는 이전, 업종 변경 행위 제한 -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규제, 환경규제 등 중복규제로 공장증설이 어려움	- 상수원 보호와 관련 있는 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에서 해제하고,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춘 기업의 경우 공장 신설 및 증설 허용
3	계획관리지역에 인접한 생산관리지역 용도변경 규제 완화	- 계획관리지역 인접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설이 제한되며, 공장건설시 토지용도 변경 필요 - 용도변경 절차가 복잡해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공장 증설 불가능	- 생산관리지역의 용도변경 허용 및 건축물 행위규제 완화
4	농업진흥지역 해제 업무처리지침 하달	- 농업진흥지역 용도변경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농업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됨 - 지자체는 농지법상 농업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고수하고 있어 공장 설립 및 투자에 어려움	- 지자체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법률 개정 내용 및 업무처리지침 하달
5	농지전용 규제 완화	- 농지전용은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 규제하고 있음 - 농지전용 규제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떨어뜨리고 농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 농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지전용 규제 완화
6	국가산업단지 내 토지용도 규제 완화	-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설립 및 신규시설 확장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법상 토지 용도규제 - 비현실적인 용도규제로 신규투자가 어려움	- 국가산업단지 내 토지용도 변경 규제 완화
7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심의 일원화	-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요함 - 중복 심의에 따라 신발전지역 개발 지연	- 중복 심의 규정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일원화
8	고압가스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설치기준 일원화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고압가스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설치기준이 서로 상이함 - 기준 불일치로 인해 사업부 내 토지이용, 설비개선 및 증설이 어려움	- 지자체 기준을 정부 기준으로 일원화
9	가축사육 제한거리 규제 일원화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음 - 환경부 권고안과 지자체별 기준이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로 축사증축 과정에서 마찰 발생	- 가축사육 거리제한 규제 일원화
II. 노 동			
1	통상임금 부담 완화	- 관련 지침 개정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 노동비용 증가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	-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1임금산정기 내에 지급하는 임금”으로 명시하도록 관련 법률 또는 시행령 개정
2	근로시간단축 노사 자율에 맡겨야	-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근로시간단축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악화시키고 인건비 상승 및 생산차질 유발	- 노·사 간 협의를 통한 자율적인 근로시간 단축 시행
3	임금피크제 법제화	- 정년 60세로 의무화 - 정년 연장 의무화에 따른 기업 부담 가중	-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 법제화

연번	과제명	현황 및 문제점	건의내용
4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 및 허용업종 등을 외국인 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중소기업 중심 배정 - 초기 중견기업과 지방소재 중견기업은 국내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데 외국인력 신규채용도 어려움	- 구인난이 심각한 중견기업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및 고용한도 상향 조정
5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선	-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기업은 종업원 수 대비 일정비율(14년 2.7%)의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시 고용부담금 부담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의무고용을 강제하고 있어 기업부담 증가	- 업종별로 의무고용률 차등적용 및 고용부담금 산정방식 개선
6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제한요건 완화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인력 공급확대를 위해 '13년부터 대기업 배정 전문연구요원 쿼터 폐지 - 중견기업도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우수인력 확보가 어려워 기업성장에 애로	- 대기업 정의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으로 명확화

III. 세 제

1	중견기업, 계열사 간 거래 과세부담 완화	- 계열기업 간 거래를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 부과(중소기업 간 거래 제외) - 계열기업 간 거래에 대한 과세는 투자위축, 기업경쟁력 저하 및 일자리 창출 저해 - 특히 정부의 계열화 촉진 정책으로 계열화한 기업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있어 정책신뢰성 하락	- 중견기업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과세부담 완화
2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상향	-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의 최대 30억원 한도에서 5억원 공제 후 10% 세율 과세 - 가업승계시 상속공제 한도는 500억원인데 증여한도는 30억원으로 터무니없이 작음	-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한도 상향조정
3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 신설 및 화학안전시설 공제대상 포함	- 안전설비투자시 투자금액의 3%(중소 7%) 공제 - 산업안전 및 화학안전 시설투자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공제 대상 확대 및 중견기업 구간 신설을 통해 부담을 완화시켜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일몰연장 및 중견기업 세액공제 5%로 확대하고 공제 대상에 화학안전 시설투자 포함
4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 신설	-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3%(중소 7%) 공제 - 중견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가 필요	- 중견기업 세액공제 5%로 확대 및 일몰연장
5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수가 증가한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조세지원 확대 필요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매출액 5천억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
6	주식명의신탁 실명전환시 과세 제외 및 자진신고제 도입	- '01.7월 상법 개정 전 법인 설립시 발기인 수(3인 이상) 규제로 명의신탁을 통해 법인 설립 - 명의신탁 전환시 사실 입증 곤란, 증여세 부담 증가, 복잡한 절차 등으로 실명전환이 어려움	- '01.7월 상법 개정 이전 설립 법인에 대해 실명전환시 증여세 과세 대상 제외 또는 자진신고제 도입
7	설탕 할당관세 물량 확대 및 관세율 인하	- 설탕은 할당관세를 적용, 매월 업체별로 쿼터량 한도를 설정하고 중소기업 배정 후 선착순 배정 - 할당관세 물량을 제외하면 관세율이 30%가 적용되어 제과업 등 설탕을 원료로 하는 기업의 비용 상승	- 할당관세 물량 확대 또는 기본관세율 인하
8	버터에 대한 양허관세율 인하	- 버터 수입시 최고 89%의 양허관세를 부과 - 관세가 낮은 가공버터(할당관세율 4%)를 대체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음	- 버터에 대한 양허관세율 인하
9	치킨 양념첨가물에 대한 부가세 면제	- 닭고기에 소금 이외에 물질을 첨가하는 경우 과세 - 자영업자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가 세금문제로 직접 양념을 하고 있어 소비자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닭고기 양념에 부가가치세 면제

연번	과제명	현황 및 문제점	건의내용
IV. 금융			
1	주채무계열제도 선정기준 완화	- 금융권 전체 신용공여액 0.075% 이상인 기업은 주채무계열로 선정하여 관리 - 기업집단 감독강화 규제로 기업경영의 자율성 침해 - 주채무계열 지정시 신용등급 하락, 자금조달 비용 상승 등으로 기업 재무구조 악화	- 주채무계열 제도 폐지
2	기술보증기금 연대보증제도 폐지	- 개인사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은 폐지했으나, 법인은 실제경영자가 연대보증 하도록 규정 - 연대보증 요구는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원칙 위배	- 법인의 실제경영자 연대보증 폐지
3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제도 폐지	- 개인사업자 연대보증은 폐지했으나, 법인은 실제경영자가 연대보증 하도록 규정 - 연대보증 요구는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원칙 위배	- 법인의 실제경영자 연대보증 폐지
4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수수료 과세 제외	- 해외 자회사의 공장건설 및 투자시 현지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필수적이며, 현지금융기관은 국내 모기업의 지급보증 요구 - 지급보증은 사실상 출자금과 동일한 성격이나 국제거래로 간주해 과세하고 있어 기업의 부담이 발생	- 국내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시 국제거래에서 제외
5	환변동보험, 중견기업 한도 상향 조정	- 환율변동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수출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보험 운영 - 거래한도가 작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견기업은 실익이 없음	- 거래규모 한도 상향조정 및 보험료 지원확대
6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의무 완화	-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용 변경, 해외현지법인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설립시 사전신고 의무화 - 해외사업활동 사전 변경신고 의무화는 중견기업의 해외 경영활동을 저해	- 내용변경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 - 해외현지법인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설립 등에 대해 변경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사후보고로 전환
7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사전신고의무 완화	- 해외직접투자시 해당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후 투자를 해야 함 - 중견기업의 해외투자 활성화 및 해외진출 저해	-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개선
8	신고의무 위반시 외국환거래정지 처분 완화	-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위반시 형사벌 혹은 과태료부과 및 외국환 거래정지 처분 - 2009년 법 개정 전 위반행위(ex: 30년전)에 대해서도 외국환 거래정지 - 형사벌 혹은 과태료에 외국환거래정지 처분까지 부과하는 것은 중복처벌	- 외국환 거래정지 처분을 폐지하거나, 2009년 법 개정 이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과 같이 외국환 거래정지 처분 발령
V. 공정거래·판로			
1	중견기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대상에서 제외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일환으로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확장자제·진입자제·사업축소 등 권고 - 중견기업, 특히 업종전문기업도 규제받아 피해 증가 - 일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민간 및 공공시장에서 경쟁 중견기업을 축출하려는 악용사례 발생	- (1안) 적합업종 규제 대상인 대기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으로 정의 - (2안) 업종전문화 중견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적합업종 대상에서 제외
2	하도급 대금지급 기간단축으로 중견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에 60일 이내에 대금지급 - 중견기업은 하도급 대금과 관련해 중소기업에는 빨리 주고 대기업으로부터는 늦게 받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비용 부담 증가	- 일정 규모의 중견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수준의 하도급 대금 결제기일 보장
3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완화	- 불공정거래, 하도급법 위반, 수위탁거래위반, 입찰담합, 뇌물제공 등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 자격을 제한 - 입찰참가 자격제한 사유가 광범위하고 중복처벌 및 과중처벌로 인해 기업의 생존에 까지 위협	- 과실 경중에 따라 처벌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화

연번	과제명	현황 및 문제점	건의내용
4	가맹계약 갱신 거절사유 완화	-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음 - 사인(私人) 간 거래행위 제한은 계약자유 원칙 위배 - 행정법규 위반이나 탈세행위의 경우에도 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 발생	- 계약 갱신은 계약자유 원칙에 맞기거나 행정법규 등 위반시 계약갱신 거절사유에 포함
5	블랙컨슈머에 대한 피해구제제도 마련	- 가맹본부 및 가맹사업자에 대한 악성민원 소비자 증가로 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음 -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주장할 경우 기업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블랙컨슈머의 허위정보 유포시 손해배상청구권 제도 도입

VI. 인증·검사

1	창세트 부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인증방식 개선	- 창세트 제조업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인증을 받아 납품해야 함 - 실측을 통해 기본모델 인증 기업만 시물레이션 방법으로 파생모델을 인증을 받을 수 있음	- 인증시 실측 방식과 시물레이션 방식 모두 허용
2	방폭 전기기계 안전인증 규제 완화	- 방폭지역내 전기기계 사용시 국내 안전인증 외에 IECEX 인증만 인정하고 있음 - 북미, 유럽 안전인증 제품도 국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해 설비개선 및 신·증설 투자에 어려움	- 해외 안전인증 제품 국내 안전인증 면제 * 북미: NFPA ISA-UL-FM-CSA 유럽: CENELEC-EN
3	축산물 친환경 인증 통합	- 축산물 및 동물 관련 HACCP, 친환경 축산물 인증, 동물복지 인증, 환경 친화 축산농장 등이 있음 - 다양한 인증제도와 복잡한 인증절차로 기업 부담 증가	- 축산물 친환경 관련 인증제도 통합 및 인증절차 간소화
4	가금류 도축 검사공영화 제도 개선	- 가금류 도축 검사공영화 시행으로 공무원인 검사관과 검사원이 도축검사를 수행 - 공무원 수 증가로 인해 국가재정 부담 증가 - 검사 수수료 납부로 인한 비용부담 증가	- 가금류 검사공영화 폐지
5	도축 검사원 자격기준 폐지	- 검사원의 자격은 일정수준의 학력 또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 - 검사 보조업무는 자격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 검사원의 자격기준 폐지

VII. 주택·건설

1	보증기관의 면책채권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 통합도산법은 면책채권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 - 일부 보증기관은 면책채권에 대해 채무변제를 강요하거나 보증을 거절하고 심지어 계열기업까지 보증을 거절하여 기업 경영활동에 애로	- 보증기관의 면책채권에 대한 차별금지 위반시 처벌 강화
2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발주시 중복성 심사 일원화	- 발주청은 100억 이상 공사 발주시 타당성(설계VE)을 검토해야 하며, 각 지자체도 계약원가 심사를 해야 함 - 중복심사로 행정업무 부담 증가 및 공사 발주 지연	- 중복성 심사 일원화
3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중복규제 완화	-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법에 따라 신고할 경우 건설공사기술용역을 수행했으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예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을 추가 등록해야 함 - 추가 등록은 중복규제에 해당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예외 인정

VIII. 기타

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정의 명확화	- 대기업인 SW사업자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정의하고 공공SW사업금액 하한을 두고 있음 -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중견기업은 공공시장 판로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기업 SW사업자 기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 명확화
2	방화구획 설치 완화 규정 구체적 명시	- 일정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하며,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를 완화하고 있음 - '13.11월 감사원 지적 이후 설치 완화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 공간의 비효율적 이용 및 건축비 상승 등 기업의 부담 증가	- 방화구획 설치 완화 규정 구체적 명시

연번	과제명	현황 및 문제점	건의내용
3	관계기업제도 적용 완화	- 지배·종속 관계가 있는 기업의 경우 독립된 기업이 아닌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 - 관계기업은 '15년부터 유예기간 적용하나 기적용 기업의 경우 차별대우를 받게 됨	- 관계기업제도 시행으로 기 졸업 기업에 대해서도 유예기간 소급 적용
4	에너지 사용제한 규제 완화	- 하·동절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기간 내 대규모 집중 생산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전기 사용 제한으로 부담 증가	- 생산 물량 집중되는 기업 및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예외 범위를 설정하거나 의무감축률 하향 조정
5	선원 승하선 공인시 민간보험 가입자 차별대우 시정	-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재해보상 및 임금채권보장을 위해 의무적으로 민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 - 항만청 선원 승선 공인 신고시 민간보험 가입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통해 보험선택권 제한	- 선원 승선 공인 신고시 민간보험에 대한 차별대우 시정
6	수출품목에 대한 법규준수도 평가기준 완화	- 법규준수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 수출입 검사 및 절차간소화, 납세유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수입신고는 잠정가격신고제를 두고 있으나 수출신고는 잠정가격신고제가 없어 수출정정신고시 법규준수도가 낮게 평가되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 법규준수도 측정시 수출신고 정정에 대해 감점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7	축사용 가스난방기기 수입절차 간소화	- 축사용 수입 가스난방기기 사용시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 결과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사실상 축사용 난방기기 수입 규제에 에너지 낭비가 발생하고 기업부담 증가	- 축사용 가스 난방기기에 대해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 절차 폐지
8	초기 중견기업, 지방자단체 육성기금 지원 확대	- 지방 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육성기금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 - 초기 중견기업은 공장이전이나 사업 확장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자금지원 대상에 초기 중견기업 포함
9	부산신항만 부두내 벌크선 접안 부두 설치	- 부산신항만은 당초 다목적 부두로 계획되었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컨테이너 전용으로 용도변경 - 대용량 벌크선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가 없어 기업의 물류비용 급증 및 정책 신뢰성 하락	- 부산 신항만을 컨테이너 중심으로 운영하더라도 벌크선이 입항할 수 있는 부두 개설

I. 입 지

1. 산업기술단지 내 도시형공장 설립 규제 완화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법령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도시형공장의 설립 등)

□ 현 황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산업기술단지에 도시형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기업을 창업자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어 중견기업이 산업기술단지 내에 도시형공장을 설립할 수 없음

* 도시형공장 :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

□ 문제점

- 중견기업의 산업기술단지 내 도시형공장 설립이 불가하여 기업 활동의 어려움 초래
 - 산업기술단지 입주 요건상 기업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중견기업의 도시형공장 설립이 불가하여 사실상의 규제요인으로 작용
 - 산업기술단지 입주 당시 중소기업이었던 중견기업의 성장애로요인으로 작용
- 중견기업의 도시형공장 설립 규제는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키고 해외로의 투자 이탈을 유발

- 중견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형공장 설립규제 완화 필요

※ (사례A사) 송도산업기술단지에 소재한 TFT-LCD 모듈 및 모바일용 터치패널 등을 생산하는 Display 전문기업 A사는 '12년부터 중국시장 확대를 위해 산업기술단지 내 도시형공장 설립을 추진했으나 법령상 공장 설립이 불가능 → '13.8월 중국 광둥지역에 약 250만 달러를 투자해 공장 설립

□ 건의내용

- 중견기업의 산업기술단지 내 도시형공장 설립 규제 완화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산업통상자원부)

□ 법령개정(안)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 2>

현 행	건의(안)
제5조의2(도시형공장의 설립 등) ① 생략 ②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의 중소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제5조의2(도시형공장의 설립 등) ① 생략 ② 좌동 1~2. 좌동 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신설>

2. 자연보전권역 공장신설 및 증설 규제 완화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현 황

-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 신설·증설 또는 이전, 업종 변경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자연보전권역 규제>

	관련법령	주요내용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9 및 시행령 §13	3만㎡ 이상의 공업용지·관광지 조성사업 및 도시개발·지역종합개발사업·택지조성사업, 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 지역 택지조성사업 전면 제한, 그 외 인구유발집중시설 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20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 신·증설 또는 이전 하거나 업종변경 행위 금지, 예외적 인정
	국토계획법 §58 및 시행령 §55	개발행위 허가규모 5천㎡ 미만

□ 문제점

-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 수도권 규제와 더불어 환경규제 등 중복규제로 인해 적시에 공장증설을 하지 못함에 따라 기업경영에 어려움 발생
 -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계획 및 이용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외에도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등의 중복규제를 받고 있음

- 특히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은 대부분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공장 신축 및 이전이 불가능

○ 이러한 중복규제로 기업의 투자가 지연되고 일자리 창출이 지연

- 자연보전권역의 투자지연 현황은 총 84개사 10조 8,153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7,426명의 일자리 창출이 지연

<자연보전권역의 기업투자 지연 현황>

시·군	기업체 수	투자액(억원)	고용창출(명)
용인시	10	1,360	860
광주시	19	758	677
이천시	22	101,408	4,771
안성시	1	9	100
여주군	18	4,324	743
양평군	6	64	145
가평군	8	44	130
계	84	108,153	7,426

* 고용창출은 직접고용 및 간접 고용창출 효과를 포함함

* 자료 : 김은경, “자연보전구역 입지규제 개선방안”, 경기개발연구원, CEO REPORT NO. 38, '10.12월

※ (사례B사) B사는 식료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으로 1987년 경기도 이천공장을 준공해 아미노산 간장과 양조간장을 생산하고 있음. 2009년 다국적기업과 수출계약을 수주하는 등 해외시장 판로가 확대됨에 따라 공장 증설을 추진했으나 입지규제로 불가능. 게다가 이천공장은 수십억원을 투자해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고도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이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에 해당되어 특정대기유해물질(산분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염화수소가 특정대기유해물질 지정) 배출시설 공장은 건축을 제한하고 있음

□ 건의내용

- 자연보전권역 중 상수원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에서 해제
- 자연보전권역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춘 기업의 경우 공장 신설 및 증설을 지자체가 허용하도록 관련 법 개정

3. 계획관리지역에 인접한 생산관리지역 용도변경 규제 완화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6조
- 「농지법」 제6조, 제34조~제43조

□ 현 황

- 생산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4층 이하의 건축물이나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4층 이하 건축물로 제한하고 있어 공장을 건설을 할 수 없으며,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토지용도를 변경해야 함

□ 문제점

- 계획관리지역에 입주한 회사의 인접 토지가 생산관리지역인 경우 공장 증설이 어려우며, 토지용도를 변경을 하더라도 다양한 법률과 규제로 인해 용도변경 절차가 복잡하여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야 해 현실적으로 공장증설이 불가능

<토지용도 변경 과정>



※ (사례K사) 1997년에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K사는 사업 확장을 위해 공장을 증축하려고 하였으나 경계에 있는 부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공장증설이 어려움. 용도변경을 득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부지가 농지로 되어 있는 경우 농지법 상법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 할 수 없어 토지 전용허가를 얻어야 하며, 전용허가 후에도 건축법 및 지자체 기준에 따른 시설규모제한 등으로 증설에 한계가 있음

□ 건의내용

- 사업장의 규모 및 사업형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토지 용도 변경 필요성이 타당한 경우, 생산관리지역의 용도변경 허용 및 건축물 행위규제 완화

4. 농업진흥지역 해제 업무처리지침 하달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 법령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농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현 황

-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용도지역의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며,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업진흥지역을 계획관리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한 경우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중 농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조>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① ~ ⑤ 생략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요청을 받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1.4.14>

⑦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제6항 후단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신설 2011.4.14, 2013.3.23, 2013.7.16>

1.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2.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 문제점

- '11년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경우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농지법에 의한 농업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고 토지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간소화함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1조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농림 분야 공무원 및 농림 분야 전문가 각각 2명 이상 의무 구성하도록 규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 중 농업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고수하고 있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제한되고 공장 설립 및 증축 등이 지연되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례B사)

- B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된 지역 1만평 부지에 공장설립을 추진
- 그러나 지자체가 용도변경된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간주하여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를 요구, 공장설립 및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
- B사가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용도변경했을 당시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 중 농지관련 위원이 없었다는 이유로 농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
- 지자체의 불합리한 행정절차 요구로 인해 공장설립 및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B사의 손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 건의내용

- 지자체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법률 개정 내용 및 업무처리지침 하달

5. 농지전용 규제 완화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관련법령 : 「농지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 현 황

- 농지전용규제는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농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농지전용허가신청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가 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전용면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음

<농지전용허가·협의 권한>

구 분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농업진흥지역 안	3만㎡ 이상	3천㎡ 이상 ~3만㎡ 미만	3천㎡ 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20만㎡ 이상	3만㎡ 이상 ~20만㎡ 미만	3만㎡ 미만
농림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 안	-	10만㎡ 이상	10만㎡ 미만

□ 문제점

- 농업의 경제적 중요성이 감소하고 농가인구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에 의해 휴경농지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전용규제는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음

*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 1970년 4.2% → 2010년 20.9%

- 농지는 소유한 소유주의 재산권인데,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

□ 건의내용

- 농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지전용 규제 완화

<농지전용허가·협의 권한>

구 분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구청장
농업진흥지역 안·밖	20만㎡ 이상	10만㎡ 이상 ~20만㎡ 미만	10만㎡ 미만
농림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 안	-	10만㎡ 이상	10만㎡ 미만

6. 국가산업단지 내 토지용도 규제 완화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 현 황

-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들은 공장설립 및 신규시설 확장시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법상 토지 용도규제를 하고 있음
 - 용도변경의 경우 기업이 관리기관에 신청하고 관리기관은 승인을 하려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 관리기본계획변경(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변경,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위하여 변경, 산업단지구조 고도화계획에 따라 변경)
- 용도변경(공장시설, 지식산업시설, 정보통신산업시설, 자원비축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물류 시설), 지역특화산업(농공단지의 경우만 해당), 전력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 재생산업시설, 친환경신기술촉진시설, 그 밖에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 준공된 산업단지개발특례

□ 문제점

- 국가산업단지 내 토지용도는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산업단지조성 초기에 설정된 토지용도 규제로, 노후 산단일수록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신규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A사는 시화산업단지 내에서 폐기물처리사업 및 신재생에너지(스팀) 공급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견기업
- 사업 확장을 위해 산업단지 내 보유 중인 유휴토지에 폐기물 처리시 사용되는 요소수 공장설립을 추진함
- 유휴토지가 관리기본계획상 전력부지로 되어 있어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공단측에서 용도변경을 불허함
 - 불허사유 : 2013년 전력대란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여 단지 내 전력부지로 되어있는 곳에 발전시설이 아닌 타 시설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용도변경은 불가
- 관리기본계획상 토지 용도는 산업단지 조성 초기에 설정된 10년 이상 된 비현실적인 토지용도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용도변경을 허가하지 않아 기업의 투자 활동이 제약받고 있음

□ 건의내용

- 산업단지 내 토지용도변경 규제 완화

7.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심의 일원화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관련법령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

□ 현황 및 문제점

-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발전촉진지구 지정시 개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정책위원회의 중복심의를 거침에 따라 신발전지역 개발이 지연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심의 기간은 각각 약 4개월이 소요되며, 중복심의로 인해 최대 8개월이 소요
- 위원회 활동현황을 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월평균 약 3.6회 개최된 반면 국토정책위원회는 월평균 0.8회 정도 운영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위원 대부분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심의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함

<위원회 활동 현황 비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정책위원회			
구분	소계	본회의	분과위	구분	소계	본회의	분과위
'10년	41	13	28	'12년	5	1	4
'11년	45	18	27	'13.8월	7	1	6
'12년	43	21	22				
계	129	52	77	계	12	2	10

* 국토정책위원회는 '12.5월말 구성되었으며, 회의는 출석회의와 서면회의를 포함한 것

* 자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따라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안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필요가 있음

※ (사례B사) 신발전지역 지역 개발참여를 계획하고 있는 B사는 사업준비를 위해 인력 및 장비 등을 사전에 준비하였으나,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의 중복심의 이후 지자체의 실시계획 승인까지 끝난 후에 사업이 발주됨에 따라 개발 착수가 지연됨

□ 건의내용

-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시 중복심의 규정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일원화

□ 법령개정(안)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

현 행	건의(안)
제8조 ①항~③항 생략 ④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시도지사 및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①항~③항 생략 ④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시도지사 및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8. 고압가스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설치기준 일원화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청원군청

□ 관련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1항 1호 별표4
- 청원군 고시 제2005-70호

□ 현 황

- 고압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설치기준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과 지자체 고시 기준이 서로 상이
 - 고압가스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설치기준에 대해 청원군 고시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거리의 2배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 문제점

- 시행규칙과 지자체 고시 기준 불일치로 인해 사업부지내 토지이용 및 설비 개선 및 증설에 제한을 받고 있음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설치기준>

구 분	산 소	독성가스 또는 가연성 가스	그 밖의 가스
제1종보호시설	12m~20m	17m~30m	8m~14m
제2종보호시설	8m~14m	12m~20m	5m~10m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안전거리는 위 기준의 1/2를 곱한 거리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처리능력 저장능력에 따라 거리기준을 달리하고 있음

※ (사례E사) 전자재료용 특수가스 제조업체 E사(연매출액 1,300억, 종업원 170명)는 오창 과학단지 내 입주 기업으로 사업부지 내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설비 개선 및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건의내용

- 지자체 고시 기준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으로 일원화

□ 법령개정(안)

<청원군 가스사업 허가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005-70호>

현 행	건의(안)
제3조(허가기준) 가스사업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생략 ② 고압가스 특정제조·일반제조·충전업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u>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 가목에서 정한 거리의 2배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u>	제3조(허가기준) 가스사업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생략 ② ----- ----- <u>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 가목에서 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u>

9. 가축사육 제한거리 규제 일원화

□ 소관부처 : 환경부

□ 관련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

□ 현황 및 문제점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음
- 환경부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을 두어 축종별 거리제한을 두고 있으나 지자체별 기준이 상이하고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강화된 제한을 두는 지역이 존재하여 축사 증축 등의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마찰이 발생하고 있음

* 환경부 권고안은 단순·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기준이 미비함에 따라 지자체별 기준이 크게 상이

<지자체별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 분	환경부 권고안	충북(음성)	경북(고령)	전북(익산)
소·말	100m	200m	100m	300m
젓소	250m	200m	250m	300m
돼지	500m	800m	500m	2,000m
닭·오리	500m	500m	500m	1,000m

□ 건의내용

- 환경부 권고안과 지자체별 가축사육 거래 제한 규제 일원화

Ⅱ. 노 동

1. 통상임금 부담 완화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현황 및 문제점

- 중견기업은 '88년부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을 포함한 임금체계를 특별한 문제 없이 운영해 왔으나,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대상이 되고 범법자로 취급당하고 있음
- 지난 대법원 판례 이후 고용노동부는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 지침을 개정(14.1.23)
 -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중견기업은 막대한 인건비 부담 등으로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심각한 경우 폐업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됨
 - 실제로 일부 기업은 해외로의 공장 이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음

※ (사례A사)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퇴직금과 수당 등으로 매년 150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 비용을 부담할 경우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음

※ (사례B사)

-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평균 15%, 특근·잔업·연월차 수당 등 간접비를 고려할 경우 약 20%의 비용이 상승하여 기업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 연간 영업이익률인 10% 미만인 제조업 현실을 감안하면 중소기업 대부분과 일부 중견기업은 폐업 위기에 처할 수 있음

-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는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 통상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됨에 따라 제조업 평균 5.78%의 인건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업종별 인건비 상승률은 전자산업 5.10%, 조선업 5.59%, 자동차 산업 7.5%, 철강업 8.06%로 나타남
- 특히 자동차 산업 중 엔진 및 부품사의 인건비 상승률은 9.4%였으며, 완성차는 20.1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전산업에 걸쳐 0.1%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생산자 물가, 수출, 수입, 투자 등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원, %)

	인건비증가액 (2010~2011)	고용 감소율	생산자물 가상승률	수출 감소율	수입 감소율	투자 감소율
제조업	2,501,196 (5.78)	0.1 (전산업)				
조선업	2,458,512 (5.59)	0.5 (선박업)	0.78	0.28	1.79	2.50
철강업	3,851,100 (8.06)	0.6	1.14	1.28	1.52	1.06
자동차 산업	3,174,564 (7.5)	1.5	1.23	1.76	1.59	2.11
엔진 및 부품사	4,333,362 (9.4)		2.03	1.73	0.14	13.0
완성차	12,649,944 (20.17)		0.83	1.14	1.21	8.7
전자산업	1,974,384 (5.10)	0.3	0.62	0.08	0.11	2.78

* ()안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인건비 상승률

* 자료 : 조준모·이상희,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법경제학적 이해』, 법문사, 2013

조준모·이상희 외,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사 완성자동차·부품산업의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 '13.8.26, 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노동비용 증가를 유발하여 일자리를 감소시키며,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어렵게 할 것
- 금융위기 이후 노동비용이 1% 증가하면 일자리는 0.24~0.2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기업이 부담해야 할 추가비용은 약 38조 5천5백억원, 약 37만개~42만개의 일자리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경총, 2013)

-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비용부담 증가로 인한 기업경영위축’이 44.4%로 가장 높았으며, ‘신규 일자리 창출 저해’ 23.7%, ‘노사갈등 심화’ 19.8% 순으로 조사됨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통상임금 실태조사 및 시사점”, ’13.8월)
- 2013년 2월 맥킨지 보고서에서 지적한 한국기업의 낮은 생산성에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된다면 기업 생산성은 더욱 저하될 것임

□ 건의내용

-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1임금산정기 내에 지급하는 임금”으로 명시하도록 관련 법률 또는 시행령 개정
 - 비교법적으로 할증임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통상임금)에 관하여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노사합의를 존중하는 실태임
 - 통상임금을 법령화 하고 있는 주요 경쟁국 일본은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고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음
 -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입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임
 - 법률 해석권자인 대법원의 판례가 있더라도 전국의 소모적인 임금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입법권자인 정부와 국회가 대법원 해석과 달리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함
 -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행령 개정권자인 대통령이 입법적 결단을 하는 것
 - 그동안 기업은 정부의 지침을 충실이 따라 왔으므로, 기업들에게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기존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을 “1임금산정기 내에 지급하는 임금”으로 정의하고 이를 관련 법률 또는 시행령에 반영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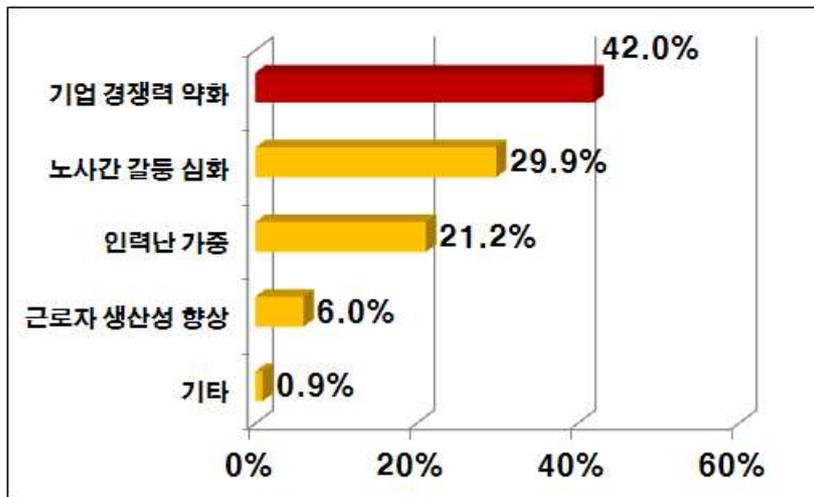
2. 근로시간단축 노·사 자율에 맡겨야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현황 및 문제점

-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한정애 의원안, 이완영 의원안, 김성태 의원안, 심상정의의원안 등) 국회 계류 중
- 근로시간단축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악화시켜 인건비 상승 및 생산에 차질을 유발하여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억제하여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중견기업의 77.0%(제조업 87.4%)가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인건비 상승 및 생산차질 등으로 인한 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약 145억원으로 추정됨(중견련, '13.11월)
 - 근로시간단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업 경쟁력 약화(42.0%)', '노·사간 갈등 심화(29.9%)', '인력난 가중(21.2%)' 순으로 응답하는 등 부정적인 응답이 전체의 93.1%를 차지하였으며 '근로자 생산성 향상'이라는 응답은 6.1%에 불과함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 자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견기업 실태조사”, '13.12월

- 업종별, 기업별 근무여건, 전문인력 현황 등 제반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확일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킴
 - 특히 숙련공이나 고정인원으로 운영되는 생산라인의 경우 근로시간 조정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소재 중견기업의 경우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인력수급문제 및 설비한계로 인해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며, 그로 인해 계약 기간 내에 제품을 납품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
- 근로시간단축은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인 중소·중견기업의 임금 하락 및 생산량 감소, 그리고 이직 증가로 구인난을 가중시킴

<근로시간 단축이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휴일근로 제한시)>

	근로시간 감소	생산량 감소율	임금하락율	이직율
1차 협력업체	9.6시간	14%	12.4%	15.6%
2차 협력업체	8.5시간	13.4%	12.1%	25.3%

* 자료 : 변양규, “최근 노동관련 주요 입법 현황”, 한국경제연구원, '13.8.29

□ 건의내용

- 근로시간단축은 법 개정을 통해 강제할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유지하고 노·사간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여 중복으로 할증하는 문제 개선
 - 휴일·연장근로수당의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현재 대법원 판례이나, 최근 일부 하급심 법원이 이를 번복하려는 해석을 시도하고 있음(할증률 100%)
 - 일본의 경우 행정해석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음 (할증률 35%)

- 휴일근로중복할증은 특히 재정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어 경쟁력 약화, 사업의 존폐 문제까지 발생시킴
- 최근 정부(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입법 개정안을 추진중
- 이는 수십년간 대법원과 정부의 지침에 따라 임금제도를 운영해 온 기업을 하루아침에 법 위반자로 전락시켜 법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입법추진 중단 건의

3. 임금피크제 법제화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현황 및 문제점

- '13.5월 근로자 정년 60세 이상을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되었으며, '16.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고령자고용촉진법 주요 내용>

① 근로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시행일: ▲300인 이상 사업장 '16.1월, ▲300인 미만 사업장 '17.1월

② 노사에게 개별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 의무화

- 정년연장 60세 이상 의무화로 부담해야 할 추가 인건비 비용은 매년 7.5%씩 증가
 -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함에 따라 매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총 인건비 대비 7.5%(자동연공승급률 2.5% 포함)
 - *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한국노동법학회, 『정년 60세 시대』, 2014년 3개 학술·연구단체 공동심포지엄, '14.1.22
 -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년연장 의무화로 인건비 상승 및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현행 임금체계의 근본적인 개편 없이는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만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임금피크제는 법제화하지 않고 있어 노·사간 임금체계 개편 추진 협상시 노·사 갈등 우려

- 정년연장 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 건의내용

- 정년연장 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법제화 필요

4.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관련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제5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외국인근로자의 도입계획의 공표), 제9조(조사·연구사업)

□ 현 황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에 따라 국무총리실 소속 “외국인력정책 위원회”에서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및 허용업종, 송출국가 등을 결정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자격조건은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의 사업장*이며, 매년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근거로 허용인원 20% 상향조정업종을 조정

* 단,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장에 한하며,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인서가 있을 경우 가능

□ 문제점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외국인력 신규채용이 불가
 - 특히, 지방소재 및 3D업종(도축업 등) 기업의 경우 내국인근로자의 근무기피 현상으로 인해 사업체 구인난 가중

⇒ 외국인근로자 신규채용 불가, 내국인근로자 채용 애로의 이중고

-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13년 3분기 기준 사업체가 경영 및 생산 활동을 위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력 규모(부족인원)는 270천명으로 전년동기(267천명)대비 3천명(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고용노동부, “ '13.10월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13.12.30

- 그러나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발표한 '14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지난해 62천명보다 9천명 적은 총 53천명
- 특히 제조업의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최근 5년 중 최저치(79.8%)를 나타냄

<연도별·업종별 외국인력 도입규모>

(단위 : 명, %)

	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2014년	53,000 (100.0)	42,250 (79.8)	2,350	100	6,000	2,300
2013년	62,000 (100.0)	52,000 (83.9)	1,600	100	6,000	2,300
2012년	57,000 (100.0)	49,000 (86.0)	1,600	150	4,500	1,750
2011년	48,000 (100.0)	40,000 (83.3)	1,600	150	4,500	1,750
2010년	34,000 (100.0)	28,100 (82.6)	1,600	100	3,100	1,100

*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 건의내용

- 외국인 고용한도 추가 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확대 필요
 - 근로자 수 및 자본금에 상관없이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사업장을 조사하여 이들 사업장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개선안 마련
- 지방소재 및 3D 업종 중견기업의 인력수급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 상향 조정

5.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관련법령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 현황 및 문제점

- 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의 기업은 총 근로자 수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고용률('14년 2.7%) 이상의 장애인 고용이 의무화
 - * 장애인 의무고용률 : ('10년~'11년) 2.3% → ('12년~'13년) 2.5% → ('14년) 2.7%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시(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 기업 제외) 관련 사항을 신고하고 고용부담금 납부
 - * 부담금 = (의무고용 장애인 총수) - (매월 상시고용 장애인 수) x 월 단위 환산 최저임금액의 60%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노동시장에서의 취약 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 보장 및 고용촉진을 위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의무고용률을 강제하고 있어 기업의 부담을 증가
 -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업종별로 상이하며, 일부 업종(건설업, 여행업 등)의 경우 장애인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가 극히 제한적임
 - 또한, 기업이 고용을 확대할수록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시 납부하게 되는 부담금 또한 증가하여 기업의 고용창출 걸림돌로 작용

□ 건의내용

- (의무고용률) 업종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차등 적용
 - 장애인 고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해 일정비율 예외 인정
 - ⇒ “업종별 적용제외율” 재도입
- (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방식 개선
 - 부담기초액 기준(월 단위 환산 최저임금액의 60%) 완화
 - (월별 → 분기별 산정방식 변경) 기업의 연간 장애인 고용률이 기준을 충족시키더라도 한두 달이라도 미달될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 개선

6.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제한요건 완화

□ 소관부처 : 병무청

□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 병무청 훈령(제1181호, '14.3.26) 제16조(필요인원 요청 및 통보), 제20조(대기업체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 제22조(배정인원 조정)

□ 현황 및 문제점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제도는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
 - (전문연구요원) 이공계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연구기관에서 36개월 동안 과학기술 연구·학문분야 종사
 - * 보충역은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 한해 자연계 학사학위 지위도 편입이 가능하며 복무기간은 동일
 - (산업기능요원) 해당 국가기술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산업체에서 34개월 동안 제조·생산분야 종사
 - * 보충역은 기술자격이나 면허 없이 26개월 동안 종사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13년부터 대기업*에 배정된 전문연구요원 쿼터를 폐지**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체 (병역법 시행령 제77조 제3항)
 - ** 제85차 국민경제대책회의, 「창업성과 점검 및 글로벌 창업 촉진대책」, '11.4.29

- 과거 병역특례 제공을 통해 국내외 석박사급 우수인력을 영입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유인책이 사라진 상황에서 많은 인재가 국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
 - 특히, 해외 석박사급 인재들이 해외 현지 업체로 입사하는 등 두뇌유출 심각
-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 연구인력의 확보와 육성이 절실하나, 중소기업 졸업시 전문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따름으로써 기업의 성장저해 요인으로 작용

□ 건의내용

- 중견기업에 대해 인원배정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국가차원의 기술인력 유출 방지

□ 법령개정(안)

<병역법 시행령 제77조>

현 행	건의(안)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①~② 생략 ③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지정업체별 또는 시·군·구별로 배정하되, 연구기관의 경우 1개 법인에 여러 지정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별 배정인원을 정한 후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지정업체별로 배정한다. 이 경우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 장기간 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대기업에 대해서는 인원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의 기준 및 방법 등 인원의 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 ①~② 생략 ③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지정업체별 또는 시·군·구별로 배정하되, 연구기관의 경우 1개 법인에 여러 지정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별 배정인원을 정한 후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지정업체별로 배정한다. 이 경우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 장기간 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대기업에 대해서는 인원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의 기준 및 방법 등 인원의 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단, 대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제14조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 한다.
④ 생략	④ 생략

Ⅲ. 세 제

1. 중견기업, 계열사 간 거래 과세부담 완화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

□ 현 황

- 법인이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소·중견기업: 5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단, 중소기업간 거래는 과세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견기업 : 3년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 문제점

- 금년 세법개정으로 중소기업 간 거래는 과세에서 제외되었으나 중견기업은 여전히 과세하고 있어 투자 위축, 기업경쟁력 저하 및 일자리 창출 저해 우려

- 중견련 조사결과, 중견기업 120개사 중 46개사(38.3%)가 과세대상이며, 증여세 부과로 인한 세부담은 평균 4억 3,000만원, 최대 92억원임

- 중견기업의 52.1%는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해 증여세 부과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응답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일감몰아주기 과세 실태조사”, 2013

- 산업 및 업종특성상 수직계열화가 필요한 산업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

- 산업특성상 일부업종은 기술노하우, 핵심역량 강화, 타업종 생산불가,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수직계열화가 필수적임
- 특히 부품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부득이하게 계열사 간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업종까지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또한, 부도협력사를 인수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경우도 일감몰아주기로 간주하여 과세

※ (사례B사) 자동차 1차 협력업체로서 같은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 부실기업 A를 고객사의 요청으로 인수했으며, 고객사는 A사 생산 부품을 B사의 이름으로 납품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당사와 A사 간에 거래가 발생함. 고객사에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과세로 인해 A사가 직접 납품하도록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 통보를 받음. 고객사의 요청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일감몰아주기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

※ (사례C사) 지주회사의 경우 본연의 사업목적인 브랜드 로열티 수수료분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 매출액에 포함하고 있어, 회사의 수익성 악화로 지속경영이 불투명하며 실무적으로 증여의제 산출식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여 외부 세무전문가에 의뢰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D사는 정부의 계열화 정책에 따라 축산업 계열사를 설립·운영해 왔으며, D사의 계열사인 C사는 가금류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음. 따라서 D사는 계열사 간 거래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음. 그런데 계열사 간 거래를 일감몰아주기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어 정부의 축산업 계열화 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음

* 정부는 1990년대부터 축산업 발전을 위해 계열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시장개방으로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2012년 2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

※ (사례E사)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중견기업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부실 협력업체를 인수해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고용을 승계함. 자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일감을 제공했으나, 추가적 증여세를 부담해야 함

□ 건의내용

- 중견기업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해 과세 부담 완화

□ 법령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현 행	건의(안)
<p>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u>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u>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p>	<p>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u>중소·중견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u>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p>

2.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상향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6

□ 현황 및 문제점

- 법인*이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의 최대 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세율로 과세하며 상속이 개시 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정산

*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 가업승계시 상속에 의한 승계는 세법개정을 통해 지원확대하고 요건 완화하고 있으나 증여를 통한 승계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

- 가업상속공제는 한도가 계속 확대되어 현행 500억원이나 증여세 과세 특례의 경우 30억원에 불과함

- 미국, 일본 등은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증여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영국은 상속재산보다 증여재산이 과세상 유리하게 적용

- 자산이전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유인하기 위하여 사전증여 촉진이 필요

- 단기적으로는 증여한도 확대로 세수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기업 및 근로자 등이 납부할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고려하면 감소분보다 더 많은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

* 가업상속 업체당 평균 상속세는 92.4억원지만 이를 면제하더라도 3년이 지나면 법인세 등 누적납부액이 91.8억원으로 상속세 면제액을 상회(한국세무학회, 2013)

3.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 신설 및 화학안전시설 공제대상 포함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 현 황

- 산업재해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 기술유출 방지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7%)를 공제('14.12.31까지)

□ 문제점

- 산업안전 및 화학안전 관련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풍부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부담이 증가
 - (산업재해 증가) 2012년 기준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 경제 손실액은 19조 2,564억원에 달하여 전년대비 6.23% 증가(고용노동부)
 - 이는 1년 국가예산의 약 6%, 연봉 2,000만원 근로자 약 100만명을 1년간 고용할 수 있는 금액
 - (기업 안전관리 미흡) 산업계는 적극적인 안전·환경 개선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나 화학 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오히려 고조되었다는 등 부정적인 평가가 여전('14.1.9 환경부 보도자료)
 - 대부분 기업은 영업 부담을 사유로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 현장에서의 안전강화 움직임은 여전히 미약
 - 산업재해 감소 및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근로자의 안전한 노동을 위한 권리보호 등을 위해서 지속적인 안전설비 투자와 관리는 필수적이나 기업 입장에서 당장의 부담으로 작용('14.3.24 조정식의원 대표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평법·화관법 시행으로 부담 증가) 화평법 및 화관법 시행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시설, 설비)에 중소·중견기업도 투자를 해야 하는데,
- 자금력이 풍부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화학물질취급시설투자를 안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건의내용

- 일몰연장(~'18년) 및 중견기업 구간(5%)을 신설하고 화학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화학물질 취급시설(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시설·설비) 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법령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현 행	건의(안)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이 제9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 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현 행	건의(안)
제22조(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 5. 생략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 시설,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 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로서 기 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7. ~ 11. 생략	제22조(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 5. 생략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 시설,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 급시설 및 「 화학물질관리법 」에 의한 화학물질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7. ~ 11. 생략

4.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 신설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현 황

-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7%)를 공제('14.12.31까지)

□ 문제점

-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도 점차 둔화되고 있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이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2011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34개국 중 28위이며, OECD 평균대비 66.8%, 미국의 49.4%, 독일의 53.4%, 일본의 71.6% 수준임
-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23위로 OECD 평균대비 79.9%, 미국의 60.6%, 독일의 79.3%, 일본의 86.6% 수준임

<OECD 주요국대비 한국의 노동생산성 추이>

(단위 : %)

	OECD평균	미국대비	프랑스대비	독일대비	영국대비	일본대비
시간당	66.8	49.4	51.2	53.4	63.1	71.6
취업자당	79.9	60.6	72.5	79.3	81.1	86.6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11년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분석결과 발표” 보도자료, '13.4.26

- 또한 중견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절실히 필요한데, 중견기업(특히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초기 중견기업)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시 세액공제율 감소(7%→3%)로 부담 증가

※ (참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

- ‘중소→중견기업 경영애로 해소’ 부분에서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 투자세액공제(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 신설

□ 건의내용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견기업 구간(5%)을 신설하고 일몰기간 연장

□ 법령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현 행	건의(안)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9. 생략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9. 생략

5.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 현 황

○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더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15.12.31일까지)

- 청년(15세~29세) :

고용증가인원 x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금액 x 100%

- 그 외 :

고용증가인원 x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x 50%

□ 문제점

○ 고용에 대한 부담 완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게도 조세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중견기업에게도 확대한다면 신규일자리 마련 기대

· 2013년 기준 중견기업은 2,505개사로 전체기업수의 0.04%에 불과하나 총고용인원은 99.6만명으로 전체고용에서 8.8%차지

□ 건의내용

○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연구개발세액공제 기준과 동일)까지 확대

□ 법령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현 행	건의(안)
<p>① 중소기업이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 ----- ----- ----- -----</p>

6. 주식명의신탁 실명전환시 과세 제외 및 자진신고제 도입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현 황

- 2001년 7월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법인 설립시 발기인 수(3인 이상) 규제로 인해 창업주주의 구성을 위해 주변 지인들에 주식명의신탁을 통해 법인을 설립

□ 문제점

- 실질 소유자와 법적 소유자 불일치 문제로 인해 증여세나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법인주식은 대부분 친인척 명의로 등재되어 해지를 통해 실명전환이 가능하나 그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 입증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명의신탁 주식의 상속·증여시 과도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며, 실명전환의 경우 명의신탁 사실 입증에 어려움이 크고 또 가업승계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과거 상법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 수를 일정 수 이상으로 규제해왔으나, 2001년 7월 상법 개정 이후 발기인 수 규제를 폐지함
 - 이에 따라 2001년 7월 이전에 설립된 주식회사의 경우 명의신탁 주식의 실명전환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외감 중견기업(관계기업 포함) 2,477개 중 '01.7.24 이전 설립된 법인은 1,658개사

<주식회사 설립시 발기인 수(상법 제288조)>

'96. 9. 30까지	'96. 10. 1 ~ '01. 7. 23	'01. 7. 24 이후 ~ 현재
7인 이상	3인 이상	1인 이상

- 명의신탁주식 환원시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수령내역, 주금납입사실 증명 및 증자대금의 출처, 창업당시 금융거래 증명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한데, 그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명전환이 어려움
- 주식명의신탁은 실질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에 대한 수익도 실질소유자에게 귀속되지만,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명의 수탁자로 변경하여두는 것으로 실제 증여행위는 없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실명전환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진신고제도 재도입 필요

※ '97년~'98년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자진신고제도 운영

※ (사례C사) 신발을 생산·판매하는 업체 C社は '91년 법인설립 당시 주식명의신탁으로 친인척 명의로 주식을 등재하였으나, 명의신탁 사실 입증이 힘들어 환원과정에서 증여세 부담이 커서 현재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 발생

□ 건의내용

- 2001년 상법 개정이전 설립 법인에 대해서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시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자진신고제 도입

7. 설탕 할당관세 물량 확대 및 관세율 인하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현 황

- 서민 생활물가 안정, 원활한 물자수급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5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있는데, 매월 업체별로 쿼터량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우선배정 후 선착순으로 배정하고 있음
 - 설탕의 기본관세율은 30%인데, 할당관세율은 5%이며 '14년 할당관세 물량은 4만 톤임(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공고 제2014-1호)

□ 문제점

- 중소기업 우선배정 후에는 선착순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에 집중적으로 배정될 우려가 있으며, 할당관세 물량을 제외하면 관세율이 30%가 적용되어 제과업 등 설탕을 원료로 하는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 정부가 국내 설탕시장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안정 기반마련을 위하여 설탕관세율 인하를 추진했으나 국회에서는 국내 재당산업의 피해를 우려해 관세율 인하가 무산되었으며, 특정 산업을 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정부는 '11년 설탕관세율을 35%에서 5%로 낮추고자 했으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현행 30%로 수정, '12년에도 5%로 낮추고자 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13년 잠정관세를 적용해 20%로 인하하려고 했으나 무산됨
- 원당을 전량 수입하여 설탕을 생산하는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설탕관세율이 가장 높음

<원당수입 설탕 생산국의 설탕 관세율 비교>

	대만	캐나다	말레이시아	한국
원당	6.3%	4.5%	0%	30%
설탕	17.5%	4.5%	0%	30%

* 자료 : 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3.12월

□ 건의내용

-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 쿼터량 확대 또는 기본관세율 인하

8. 버터에 대한 양허관세율 인하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관련법령 : 「관세법」 제73조

현 황

- 국내 낙농가 보호를 목적으로 버터 수입 시 양허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율은 최고 89%에 이르고 있음

<버터 관세율 비교>

기본 세율	협정세율							
	FTA 협정 체결국					북한산	농림축산물양허관세	
	한·아세안	한·EU	한·페루	한·미	한·터키		추천	미추천
40%	89%	64.7%	66.7%	62.3%	89%	0%	40%	89%

* 자료 : 세계 HS정보시스템

문제점

- 국내 낙농가 보호를 위해 버터에 높은 양허관세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국산 버터 사용비율은 매우 낮으며, 기업은 상대적으로 관세가 낮은 가공버터*(할당관세율** 4%)를 대체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 버터 : 유지방 82% / 가공버터 : 유지방 79% + 식물성지방 3%

- 가공버터는 높은 수입관세를 피하고자 만든 파생상품으로 버터수입 관세가 높은 한국, 일본에서 수입

** 할당관세 : 가격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하여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의 율을 인하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대통령령으로 운용)

- 국산 버터 사용비율은 20% 미만으로 매우 낮아 높은 양허관세 부과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농림축산식품부, “국내 식품제조업 원료소비실태”, '14.4월

- 대체재인 가공버터는 '14년 6월 30일부터 6개월간 가격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동향 점검 후 연장여부 검토)하고 있으며, 업계에 따르면 가공버터의 연간 수입은 약 2만 톤에 달함

□ 건의내용

- 버터에 대한 양허관세를 인하

9. 치킨 양념첨가물에 대한 부가세 면제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 현 황

- 닭고기의 신선, 냉장 또는 냉동을 위해 소금을 첨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이외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경우 과세하고 있음

※ (참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품 등의 범위) : 정육, 건조, 냉장, 염장 등 즉, 원생산물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 면세

※ (예규) 부가 46015-2055, 1996.10.5

- 닭고기는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도계, 세척한 계육을 조미 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 문제점

- 닭고기에 각종 양념을 혼합하는 경우 미가공 식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념 닭 판매시 모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및 일반 치킨점은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양념을 하고 있어 소비자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실제로 치킨점의 평균 매출액은 8,100만원이며, 이 중 운영비 인건비 세금 등을 제외한 연 순소득은 2,500만원(프랜차이즈 2,800만원, 일반치킨점 1,900만원)에 불과*해 이들의 경우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국내 치킨 비즈니스 현황분석”, KB Industry Report 2013-1호

□ 건의내용

- 자영업자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닭고기 양념에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IV. 금 용

1. 주채무계열제도 선정기준 완화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관련법령 :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

□ 현 황

- 주채무계열제도는 기업집단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 전년말 현재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전년말 현재 금융권 전체 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인 기업집단을 주채무계열로 선정('14.4월 총 42개 계열)하여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음

* 동양그룹 사태로 인해 '13년 말 선정기준을 0.1%에서 0.075%로 하향조정

-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에 대한 여신규모·담보취득액 규모·주기업체의 의견을 참조하여 채권은행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고, 재무개선 유도, 계열사 채무보증에 의한 여신취급금지 및 채무보증 해소 계획수립, 계열 정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은행업 감독규정 제82조)

<연도별 주채무계열 선정 현황>

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4
계열수	60	35	29	25	29	36	42	43	45	41	37	34	30	42

* 자료 : 금융감독원

□ 문제점

- 기업집단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규제로 사전에 주채권은행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여 기업집단의 재무구조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에 해당함

- 2002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주채무계열제도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주채무계열제도는 지속되어 왔으며, 2013년 동양그룹 사태 이후 오히려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강화해 기업의 자율경영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주채무계열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주채무계열 편입대상 확대	•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금융권 신용공여액의 0.1%에서 0.075%로 하향 조정하여 편입대상 확대	규정 개정
관리대상계열 제도 신설	• 관리대상계열을 선정하여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하는 등 선제적 관리	세칙 개정
재무구조평가방식 개선	• 재무평가의 정밀성 제고 및 최근 경영실적 중심 평가 • 비재무평가항목의 계량화	은행 연합회 준칙 개정
약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 약정 미이행시 채권은행간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약정 체결 당사자에 주채권은행 외에 '여타 채권은행'을 포함 • 약정 미이행시 기존 제재 수단 외에 경영진 교체 권고, 금리인상 등 제재를 추가	

* 자료 : 금융위원회, 「기업부실 사전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방안」, '13.11.5

- 주채무계열 제도는 사전적으로 기업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금조달 비용을 상승시키고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실제로 재무약정 대상 그룹 계열사의 회사채 발행금리가 신용등급이 같은 다른 기업의 회사채 유통수익률보다 103~112bp 높게 발행되고 있음

<재무약정 체결 기업군 계열사들의 회사채 발행 금리>

(단위: 연 %)

회사	소속그룹	발행수익률	유통수익률	스프레드
H사(3년물)	H그룹	6.3	5.18	112 bp
D사(2년물)	D그룹	9.2	8.17	103 bp
A사(1년물)	K그룹	7.9	6.86	104 bp

* 스프레드 = 발행수익률 - 유통수익률, 1bp = 0.01%

* 자료 : 한국경제신문('10.7월)

- 업종별 특성이나 사업특성·재무상태·성장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금융권 신용공여액의 0.75%로 부채비율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한도성 여신에 대해 실제로 신용 공여되지 않은 금액까지도 당해 연도 여신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시 기업 간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채권단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결정

※ (사례A사) 2013년말 금융위는 동양사태로 인해 주채무계열 대상 선정기준을 전체 신용공여액의 0.1%에서 0.75%로 하향조정해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A그룹은 주채무계열 기업집단으로 선정되지 않기 위해 부채비율을 축소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채무를 상환했으며, 이로 인해 기업경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음

□ 건의내용

- 주채무계열제도를 폐지하거나, 폐지가 어려울 경우 업종별·산업별 특성을 감안할 수 있는 산업별 평가기준을 마련하되 지나친 부채비율 위주의 평가기준은 개선

2. 기술보증기금 연대보증제도 폐지

□ 소관부처 : 중소기업청

□ 관련법령 : 기보 기술보증규정 제25조, 연대보증운용기준 제3조

□ 현 황

-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으나, 법인에 대해서는 실제경영자가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음
 -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연대보증운용 기준에 의하면 입보대상자를 실제경영자 1인에 한하여 입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아래와 같음

<기보 연대보증 입보대상>

개인사업자	법 인
공동대표인 실제경영자	1.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2. 최대주주 또는 출자자 3. 특수관계인의 지분 30% 이상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 직함, 지분을 등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실제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은 '13.7.1부터 전면 금지

□ 문제점

- 정부가 연대보증제도의 폐단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으나 여전히 법인의 실제경영자에 대해 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주식회사 법인의 실제경영자에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원칙에 위배
- 과거에 보증기관들은 연대보증을 세워 손쉽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신용평가기법이나 위험관리 역량 강화 등에 노력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한국의 금융산업이 선진국에 비해 낙후됨

- 연대보증제도 폐지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유발할 수 있는 반면, 창업 활성화와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연대보증 제도를 개선할 경우 추가적 세수가 2조 2,428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이민화 외, 「창업자 연대보증과 국가편익」, 창조경제연구회, '13.9.24

□ 건의내용

- 법인의 실제경영자 연대보증제도 폐지

□ 법령개정(안)

<기술보증규정 제25조>

현 행	건의(안)
제25조(연대보증) ① 보증을 할 때에는 보증기업의 책임경영을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을 운용할 수 있다. ② 연대보증인은 보증기업과 경제적 이득을 공유하거나, 보증기업의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대보증인에 관한 세부 운용방법은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5조 (연대보증) 삭제

3.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제도 폐지

□ 소관부처 : 중소기업청

□ 관련법령 : 신보 신용보증규정 제5조, 연대보증인 입보기준 제4조

□ 현 황

-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으나, 법인에 대해서는 실제경영자가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실제경영자의 범위는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충족되는 1인이며, 대표이사나 이사 등 임원 중에서 고용임원(전문경영인)은 입보대상이 아님

<신용보증기금 실제경영자 범위>

개인기업	법인기업
실제경영자 * 대표자로 등재 주채무자 자격으로 채무부담	실제경영자(다음 각호의 요건 중 하나 충족) 1.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2.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3.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 30%이상 보유자 * 복수의 실제경영자가 존재시 대표이사 또는 무한 책임사원으로 등재하며 보증채무 1/n 분담

* 직함, 지분율 등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실제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은 '13.7.1부터 전면 금지

* 자료 : 신용보증기금

□ 문제점

- 정부가 연대보증제도의 폐단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으나 여전히 법인의 실제경영자에 대해 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주식회사 법인의 실제경영자에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원칙에 위배

- 과거에 보증기관들은 연대보증을 세워 손쉽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신용평가기법이나 위험관리 역량 강화 등에 노력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한국의 금융산업이 선진국에 비해 낙후됨
- 연대보증제도 폐지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유발할 수 있는 반면, 창업 활성화와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연대보증 제도를 개선할 경우 추가적 세수가 2조 2,428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민화 외, 「창업자 연대보증과 국가편익」, 창조경제연구회, '13.9.24

※ (사례B사)

- B사는 사모펀드가 최대주주(31.23% 소유)로 2013년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경영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을 거절당함
- 최근 일정지분을 소유한 주주가 입보할 경우 보증이 가능하다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통보를 받음

□ 건의내용

- 법인의 실제경영자 연대보증제도 폐지

□ 법령개정(안)

<신용보증규정 제5조>

현 행	건의(안)
제5조 (담보와 연대보증) ① 생략 ② 보증기업의 책임경영을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보증인을 입보시킬 수 있다.	제5조 (담보) ① 생략 ② 삭제

4.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수수료 과세 제외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 현 황

- 해외 자회사가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시 현지 금융기관 요청으로 국내 모회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해외 자회사는 모회사에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세법은 국제거래로 보고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고 있음

□ 문제점

- 국내회사가 해외법인을 신설할 경우 공장건설 및 설비투자 등 자본전액을 출자할 수 없어 해외법인이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할 때 필연적으로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국제거래로 보고 과세하고 있음
 - 국내 중견기업이 해외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할 경우 해외 현지 차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해외 현지법인의 신용도와 인지도가 낮기 때문임
 - 만약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해외 공장 설립 및 설비투자가 어려움
 - 국내 모기업이 해외 투자 자본금 전액을 직접 출자할 경우 국내자본의 유출이 불가피한 반면,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은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함

- 국내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은 사실상 출자금과 동일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사례N사) 해외 자회사의 현지 금융이 어려워 본사의 보증 등으로 현지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해외 자회사는 본사가 지급 보증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및 제반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있음. 해외 자회사는 해외 현지에 있는 외국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비용부담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건의내용

-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직간접 100% 소유)의 공장건설 및 설비투자를 위해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국제거래에서 제외

□ 법령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현 행	건의(안)
제4조 ①~② 생략	제4조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은 해외 자회사(직접·간접 소유 100%에 한함)에 대한 지급보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5. 환변동보험, 중견기업 한도 상향 조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현 황

- 환변동보험 가입대상을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형 (일반선물환방식)과 부분보장 옵션형, 완전보장 옵션형으로 운영

* 환변동보험 : 환율변동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수출기업을 보호하는 보험상품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을 사전에 원화로 확정할 수 있도록 지원

<환변동보험 상품별 비교>

구분	일반형 환변동보험	부분보장 옵션형	완전보장 옵션형
구조도			
대상기업	중소·중견 수출입기업	중소·중견 수출기업	중소·중견 수출기업
손익구조	환율하락시 : 보험금지급 환율상승시 : 환이익환수	환율하락시 : 최대 통화당 최대 80원까지 보험금지급 환율상승시 : 환수금 없음	환율하락시 : 환차손전액보상 환율상승시 : 환수금 없음
보험료	약 0.02% 내외(6개월 기준)	약 1.1% 내외*	약 1.5% 내외*
기간	최대 5년(수입거래는 1년)	최대 6개월	최대 6개월
보험료지원	유관기관, 지자체 등 환변동보험 지원有 (업종제한 없음)	-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수산무역협회, 무역협회, 전기산업진흥회로부터 90%까지 보험료 지원 (중소·중견 농수산물, 엔저피해기업 등) - 다양한 유관기관과 보험료지원방안 추가 논의 중 (지원대상 업종 확대예정)	
가능통화	미달러화, 엔화, 유로화, 중국 위엔화	미달러화, 엔화, 유로화	미달러화, 엔화, 유로화

* 환율옵션시장 상황 및 보장기간에 따라 보험료 수준 변동 가능

* 자료 : 한국무역보험공사

○ 보험료율 산정

- (일반형) 기본요율 × (1 - 중소기업 할인율)

* 중소기업은 10~15% 할인율 적용

- (옵션형) 기본요율(0.005%) × 추가보험요율(옵션프리미엄)

* 중소기업은 10~15% 및 특별할인율(20%) 적용 배제

* 일자별 옵션프리미엄 홈페이지 내 매일 공지

○ 환변동보험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무역협회 등에서 일반형 및 옵션형 환변동보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

<2014년 기관별 환변동 보험료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지원기관		대상기업	업체 한도 (환변동)	지원 비율	지원 예산	지원종목	
						환변동	기타
유관 기관	무역협회	수출 1천만불 이하	1.5	100%	750	○	○
	농유공(aT)	농식품 수출기업	10	90%	2,400	○	○
	수산무역협회	수산물수출기업	10(옵션형)	90%	500	○	○
	전기진흥회	회원사	5	100%	30	○	○
지자체 (‘14년 확정)	충북도	중소기업	3	100%	200	○	○
	충주시	중소기업	1	100%	10	○	○
	대구시	중소기업	5	90%	150	X	○
	경북도	중소기업	5	100%	200	X	○
	김천시	중소기업	3	100%	15	X	○
	울산시	중소기업	4	100%	70	○	○
	울주군	수출 1천만불 이하	2	100%	20	○	○
	창원시	수출 1천만불 이하	1	100%	30	○	○
	진주시	중소기업	1	100%	20	○	○
	광주시	수출 2천만불 이하	3	100%	150	○	○
	전북도	매출 700억원 이하	3	100%	180	○	○
	전남도	수출 1천만불 이하	3	60%	130	○	○
	제주도	중소기업	8	100%	150	○	○
지자체 (‘14년 미정)	서울시	수출 5백만 이하	2	100%	450	X	○
	인천시	중소기업	2	100%	80	○	○
	경기도	수출 5백만이하	1	100%	300	○	○
	강원도	수출 1천만불 이하	1.5	70%	15	○	○
	원주시	수출 3천만불 이하	1.5	70%	10	○	○
	춘천시	수출 3천만불 이하	1.5	70%	5	○	○

지원기관	대상기업	업체 한도 (환변동)	지원 비율	지원 예산	지원종목	
					환변동	기타
대전시	중소기업	2	100%	70	○	○
세종시	중소기업	2	100%	10	○	○
충남도	중소기업	3	100%	100	○	○
부산시	수출 1천만불 이하	2	100%	100	○	○
경남도	중소기업	5	100%	200	○	○
김해시	중소기업	1	100%	18	○	○

- * '14년 미확정 기관은 '13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원사업 협의 중
- * 옵션형 환변동보험은 농유공(aT), 수산무역협회, 무역협회, 전기산업진흥회 지원
- * 자료 : 한국무역보험공사

○ 환변동보험 가입한도는 일반형과 옵션형이 서로 다름

- (일반형) 전년도 순수출(수출-수입) 범위 내에서 기업의 신용등급 등을 감안해 책정
 - * 500만불 이하기업 100%까지, 기타기업은 50%(무등급)~90%(A, B등급)까지 지원
- (옵션형) 거래규모 한도 최대 50만 달러(농식품, 수산물 100만 달러)

[이용 절차]



□ 문제점

- 환변동보험은 중견기업도 이용 가능하지만, 실제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이용할 수 없음(“기관별 환변동 보험료 지원 현황” 참조)
-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가공하여 수출하는데, 일반형은 순수출(수출-수입) 실적으로 한도를 결정하고 있어 순수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경우 이용에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임

* (일반형 예시) A기업의 경우 수출이 2,000만 달러, 수입 1,900만 달러, 신용등급 A등급
 - 보험가입 가능한도 = (수출 - 수입) × 신용등급에 따른 비율
 = (2,000만 - 1,900만) × 0.9 = 90만 달러

- 옵션형은 한도를 50만 달러(농식품, 수산물 100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어 상당수의 중견기업이 이용할 수 없음

※ (사례B사)

- B사는 미국, 유럽 등 여러 국가에 연간 1억 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음.
- 수출대금으로 발생하는 환리스크를 관리하고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14.2.12 발표한 옵션형 환변동보험에 대해 검토했으나 거래규모 한도를 최대 100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어 이용할 수 없었음

- 수출 중견기업(관계기업 포함) 1,710개사의 평균 수출액은 479.6억원이며, 이 중 수출 5억원(약 50만 달러) 이하 기업이 463개사(약 27%), 5억원~10억원 이하 기업은 100개사(5.8%), 1,147개사(약 67%)는 10억원 초과 기업임

<2012년 말 수출 중견기업 수>

중견기업 수 (관계기업 포함)	수출 중견기업			평균 수출액
	전체	5억원 이하	5억원 ~ 10억원 이하	
3,436개사	1,710개사	463개사	100개사	479.6억원

- 그러나 환변동보험 실적은 옵션형의 경우 2013년 50개사 평균 7.2억원 수준으로 중견기업의 평균 수출액(479.6억원)의 약 1.5%에 불과해 사실상 중견기업이 이용할 수 없음

<환변동보험 가입실적>

	일반선물환 인수			옵선행 인수		
	실적(억원)	개사	평균(억원)	실적(억원)	개사	평균(억원)
'12년	11,468	368	31.2	-	-	
'13년	17,202	518	33.2	358	50	7.2

* 자료 : 한국무역보험공사

□ **건의내용**

- 중견기업의 환변동보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형의 경우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옵선행의 경우 거래규모 한도 상향조정 필요
- 중견기업이 일반형과 옵선행을 동시에 활용할 경우 어느 정도 환혜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6.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의무 완화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해외직접투자의 신고 등) 제2항

□ 현 황

- 해외현지법인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설립 등 해외사업활동에 대하여도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기존 신고내용의 변경으로 보아 변경신고 수리를 받아야 함

□ 문제점

- 국내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금을 송금할 때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사전신고를 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현지법인이 해외에서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의 설립 등의 해외사업활동에 대하여도 사전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중견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음
 - 해외현지법인이 전략적 제휴, M&A 등을 할 때 투자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여 사업기회를 상실할 수 있음
 - 해외직접투자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해외로 자본이 이동하는 단계에서의 규제로 충분하며 그 자본을 활용한 해외 사업활동까지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 우리 기업의 해외 현지 사업활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현지법인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설립을 포함한 해외사업활동에 대하여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건의내용

- 해외직접투자자에 대한 내용변경 사전 신고의무를 사후 보고로 하고, 해외 현지법인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설립 등에 대하여 변경보고대상에서 제외

□ 법령개정(안)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

현 행	건의(안)
<p>제9-5조 ②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현지법인의 영 제8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회사 또는 자회사의 영 제8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손자회사의 설립·투자금액 변경·청산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금전을 대여했으나 해외직접투자자의 회생절차 등 신고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1년 이내에 회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사후 보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p>제9-5조 ②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금전을 대여했으나 해외직접투자자의 회생절차 등 신고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1년 이내에 회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사후 보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7.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사전신고의무 완화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해외직접투자의 신고 등) 제1항

□ 현 황

-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에 해당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 신고를 한 후 투자를 해야 함

□ 문제점

-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사전 신고를 하고, 신고 수리된 경우에만 해외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중견기업의 해외투자 활성화 저해 및 해외진출을 어렵게 함
 - 해외법인에 1주(주당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음
 - 해외직접투자를 사전신고토록 하고, 신고 수리 후 해외투자를 하도록 한 것은 기업의 해외 경영활동을 방해하고 투자 타이밍을 놓쳐 기회를 상실할 수 있음
-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 사전 신고의무를 사후 보고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건의내용

- 중견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의무를 사후보고로 하고, 다만 해외 투자금액이 큰 경우 사전 신고제로 규제 완화

□ 법령개정(안)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

현 행	건의(안)
<p>제9-5조(해외직접투자의 신고 등) ① 거주자(해외이주 수속중이거나 영주권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가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p> <p>1~3. 생략</p>	<p>제9-5조(해외직접투자의 보고 등) ① 거주자(해외이주 수속중이거나 영주권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가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금액이 미화 2만 달러 이상인 경우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p> <p>1~3. 생략</p>

8. 신고의무 위반시 외국환거래정지 처분 완화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19조, 제29조, 제32조

□ 현 황

-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위반시 형사벌 혹은 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최근 2년간 2회 이상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을 충족할 경우 외국환거래정지 처분이 행하여지도록 되어 있으며,
 - 특히 '09.2.4 이전의 신고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아무리 오래전 사항이라도 위반건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외국환거래정지 처분이 내려지도록 되어 있음

□ 문제점

-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위반시 형사벌 혹은 과태료 처분 외에 외국환거래정지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중복처벌에 해당
 - 최근 2년간 2회 이상 신고의무 위반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를 정지·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제19조)
 - 게다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29조)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32조)할 수 있음
- 외국환거래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기업의 모든 해외사업활동이 정지될 수밖에 없는바, 단순한 절차적 신고규정 위반에 대하여 사업활동 자체를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 특히 다국적 기업이 늘어나고 국내 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과도한 처벌은 우리 해외현지법인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2009년 법 개정 당시 외국환거래정지 처분의 발령요건을 엄격히 제한 하였으나, 2009년 법 개정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여전히 위반 시기 및 횟수와 무관하게 외국환거래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

□ 건의내용

-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외국환거래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폐지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에도 최소한 2009년 법 개정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현행법과 같이 외국환거래정지 처분의 발령 요건을 엄격하게 변경

V. 공정거래·판로

1. 중견기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대상에서 제외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동반성장위원회

□ 현 황

- 2011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일환으로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품목을 생산하는 중견·대기업에 대해서는 확장자제·진입자제·사업축소·사업이양·사업철수 등을 권고하고 있음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현황>

	제조업	서비스업	총계
2011년	82개	-	82개
2012년	3개	15	18개
총계	85개	15	100개

* 자료 : 이동근,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13.6월

□ 문제점

-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구매제도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업종제도로 민간시장까지 규제하고 있어 중견기업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중소기업 국내 판로지원 정책>

직접생산확인제도 적격조합 확인제도 조합추천 소액 수의계약 - 중소기업구매목표비율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 중소기업 기술개발 우선구매제도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구축·운영 - 중소기업 공동상표 개발 및 홍보지원 -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 중소기업 공동 A/S콜센터 운영 - 중소기업의 마케팅 기반 조성 -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
---	--

* 자료 : 중소기업청

- 업종전문화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큼

※ (사례S사) 지난 65년간 간장, 고추장, 된장 등 장류에 업종전문화를 통해 성장한 장류전문기업인데, 주력 품목인 간장, 고추장, 된장(매출액의 50% 이상 차지) 등이 2011년부터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일부품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도 지정되어 있어 민간시장과 공공시장에서 중복규제를 받고 있음
 - LED등, 간장(혼합간장), 된장, 고추장, 아스콘, 조미김, 레미콘, 판지상자 등
- 최근에는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제도를 악용하여 적합업종으로 신청하여 경쟁자인 중견기업을 시장에서 축출하려는 모럴헤저드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사례H사) 업계에 의하면, 전동식 의료용 침대 시장의 시장점유율 1위는 중소기업 H사이며, 2위, 3위는 중견기업 A, B사 임. 그런데 H사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동식 의료용 침대를 2014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공공시장)과 중소기업 적합업종(민간시장)으로 신청했으며, 경쟁사인 중견기업들을 공공시장과 민간시장에서 퇴출시키려 하고 있음

-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 간주해 적합업종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대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

- 모든 중견기업을 적합업종 규제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중견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건의내용

- (1안) 대기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적합업종 규제 대상에서 제외
- (2안) 업종 전문화를 통해 성장한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의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에 제외

2. 하도급 대금지급 기간단축으로 중견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 현 황

-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를 원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지급을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 중견기업은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이자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원사업자의 위치에 있는데, 현행 하도급법상 중소기업과 거래시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에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반면 대기업과 거래시 수급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게 됨에 따라 대금수취에 어려움 발생

- 1차 협력사 비중이 상당한 중견기업은 하도급 대금지급 의무조항으로 인해 중소기업에는 빨리 주고, 대기업으로부터는 늦게 받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

* 중견기업(제조업)의 75.1%가 하도급 거래관계에 있으며 이 중 1차 협력사는 49.6%, 2차 이하 협력사 12.7%(중견련 실태조사, 2013)

※ (사례A사) 포장용 유리 제조사인 A사의 경우 중소기업과의 거래시에는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대기업과 거래시 대기업은 당사에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불함에 따라 연간 9.5억원의 비용부담이 발생

□ 건의내용

- 일정 규모의 중견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수준의 대금 결제기일 보장

3.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완화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 현 황

- 지자체계약법 등에서는 불공정 거래, 하도급법 위반, 수·위탁거래 위반, 입찰담합, 뇌물제공 등 부정당업자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문제점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거래질서의 적법성 및 거래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입찰참가 자격제한 사유가 광범위하고, 중복처벌 및 과중처벌로 인해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음
-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행위 유형이 21가지로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지난 5년간(2008~2012년) 부정당업자 제재는 1,466건에 이르고 있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조문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조문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제1호	계약이행시 부실·조잡·부당·부정 이행	제12호	입찰 참가 방해,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이행 방해
제2호	부정 하도급	제13호	감독 또는 검사 방해
제3호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자로 공정위로 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제14호	계약이행능력 심사 서류 미제출 또는 서류제출 후 심사 포기
제4호	조사설계금액, 원가계산금액 등 부적정 산정	제15호	일괄입찰(턴키입찰)시 실시설계서 미제출
제5호	안전사고(사망사고 등) 발생	제16호	입찰 및 계약체결 제한 요건 위반 계약 체결자
제6호	계약의 불체결, 불이행	제17호	부적절한 감리원 교체
제7호	입찰 담합	제18호	사기로 지자체에 손해를 끼친 자
제8호	입찰, 계약 서류 위조·변조, 부정행사, 허위 서류 제출	제19호	사전누출 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
제9호	고의 무효 입찰자	제20호	사업타당성 조사 부실 수행
제10호	뇌물 제공	제21호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 후 심사 포기
제11호	입찰 불참가		

* 기준 : 지자체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물품구매		221	279	229	188	190	1,107(75.5%)
시설공사		52	67	64	133	43	359(24.5%)
계		273	346	293	321	233	1,466(100%)
사유별 제재	계약미체결	46	33	24	23	30	156(11%)
	계약불이행	188	223	137	173	142	863(60%)
	적격심사포기	27	12	40	11	6	96(7.5%)
	뇌물제공	2	4	1	6	7	20(1.6%)
	담합입찰	3	33	1	3	9	49(2.9%)
	부정행사	6	18	3	1	3	27(1.6%)
	허위서류제출	-	9	46	94	16	174(10.6%)
	부실·조잡 및 부정시공	1	-	39	9	15	73(4.4%)
기타 사유	-	-	2	1	5	8(0.4%)	

* 자료 : 조달청, 『2012 조달년보』, '13.8.10

- 일부행위(제2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10호 등)는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등 관련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다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
- 특히 입찰담합, 뇌물공여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재제가 4~5개씩 중복부과

<입찰담합 및 뇌물공여에 대한 중복 제재 비교>

	관련법령	제재기관	처벌 및 제재내용	효과	비고
입찰담합	「형법」 (§315, 경매, 입찰의 방해)	법원	2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 (§95, §98)	법원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 적용
	「공정거래법」 (§19, §21, §22)	공정위	매출액의 10/100미만 과징금	경제적 부담	
	「지자체계약법」 시행령 (§92)	당해발주처	입찰참가자격 제한 2년 이하	공공 입찰 참여 불가	전 발주처
	PQ심사	발주기관	신인도 감점(-2점)	공공 입찰 참여 곤란	1년간
뇌물공여	「형법」 (§133, 뇌물공여죄)	법원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미만 벌금		
	「건설산업기본법」 (§83, §95의 2)	등록관청 법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이하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공공+민간공사 참여 불가	양벌규정 적용
	「지자체계약법」 시행령 (§92)	당해발주처	입찰참가자격 제한 (2년이하)	공공 공사 참여 불가	전 발주처
	PQ심사	발주기관	신인도 감점(-2점)	공공공사 참여 곤란	1년간

* 자료 : 두성규, “현행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설산업연구원, '13.11월 수정보완

- 과실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은 과잉처벌에 해당함
- 기업은 한 번의 실수로 최대 2년까지 모든 공공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음
 - 특히 매출액에서 공공부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은 파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
- 실제로 '06년부터 '09년까지 공공입찰 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종합건설 업체 80개사 중 56개사가 건설업계에서 퇴출

<지자체 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구 분	해당 조항	개선방안
다른 법률과 중복(폐지)	· 제2호 : 부정하도급	· 건설법 등으로 처벌
	· 제3호 : 공정위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	· 공정거래법 등으로 처벌
	· 제5호 : 안전사고 발생	· 산업안전법으로 처벌
	· 제7호 : 입찰담합	· 공정거래법으로 처벌
	· 제10호 : 뇌물수수	· 형법, 건설법 등으로 처벌
절차적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호 : 계약의 불체결, 불이행 · 제9호 : 고의 무효 입찰 · 제11호 : 입찰 불참가 · 제12호 : 입찰참가 방해, 계약 체결 또는 이행 방해 · 제14호 : 심사서류 미제출, 서류 제출 후 심사 포기 · 제15호 : 실시설계서 미제출 · 제17호 : 부적절한 감리원 교체 	· 과징금, 과태료로 전환

4. 가맹계약 갱신 거절사유 완화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관련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현 황

- 가맹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의 가맹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가 없음
 - 단, 가맹사업자의 계약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또는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

□ 문제점

-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가맹계약은 사인(私人)간의 계약으로 이러한 거래 행위까지 국가가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계약자유 원칙에 위배됨
- 또한 가맹사업자가 근로기준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행정법규를 위반하거나 탈세행위를 하는 경우 가맹본부 및 다른 가맹사업자들의 평판 (reputation)을 떨어뜨려 손해를 입힐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 (사례A사) A사는 제빵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으로 업종특성상 아르바이트 등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가맹사업자들이 많음. 가맹사업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 또한, 일부 가맹사업자는 유통기한을 임의대로 변경하여 판매하는 사례도 있어 가맹본부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기도 함

□ 건의내용

- 가맹계약 갱신은 쌍방간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맡기거나 가맹사업자의 행정법규 위반 등 가맹본부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쳤을 경우 계약 갱신 거절사유에 포함

5. 블랙컨슈머에 대한 피해구제제도 마련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현 황

- 최근 가맹본부 및 가맹사업자에 대한 악성민원소비자(일명 블랙컨슈머) 증가와 이에 따른 피해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 블랙컨슈머로 인한 기업의 피해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83.4%가 블랙컨슈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악성클레임 처리 관련 애로(복수응답)>

인터넷· 언론유포 위협	폭 언	고소·고발위협	업무방해 연락·방문	기 타
71.0%	39.7%	17.6%	16.8%	1.1%

*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블랙컨슈머로 인한 기업피해현황과 대응과제 조사”, 2011

- 프랜차이즈업종의 경우 식품에 이물질 발견 등에 따른 과도한 보상요구가 증가하면서 가맹본부 및 가맹사업주의 피해가 증가

□ 문제점

- 가맹사업법상 소비자가 가맹본부 및 가맹사업자에 대한 근거도 없이 허위주장을 주장하는 경우 가맹본부 및 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방법이 없음
 - 블랙컨슈머의 주장이 방송이나 SNS등 대중매체를 통해 확산될 경우 가맹본부나 가맹사업자의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
 - 대중매체를 통해 전파된 허위사실은 가맹본부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고 가맹사업자의 매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사례A사)

- A사는 프랜차이즈 업종을 하는 중견기업으로 지난 '10년 당사 가맹사업장에서 쥐가 들어간 빵이 나왔다고 SNS 등 인터넷에 유포(일명 쥐식빵 사건)
- 해당제품의 경우 당사 공장에서 직접 제조하지 않고 가맹점에서 직접 제조하는 제품으로 수사결과 인근 경쟁업체 가맹점주가 자작극을 통해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판명
- 쥐식빵 사건으로 인해 가맹본부의 브랜드 가치 및 신뢰가 훼손되고, 당사 가맹사업주의 막대한 손해 발생
- * 쥐식빵 사건으로 인해 80억원어치의 크리스마스 케이크 구매예약이 취소

□ 건의내용

- 블랙컨슈머가 허위정보 등을 유포하여 가맹본부 및 가맹사업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구제제도 마련

VI. 인증·검사

1. 창세트 부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인증방식 개선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 창세트 부문

□ 현 황

- 창세트 제조업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인증을 받아 납품해야 함

□ 문제점

- 물리적 측정 방법을 원칙으로 하는 인증 절차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중소·중견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
- 2012년 관련 규정 개정으로 시뮬레이션 측정 방법을 창세트 효율 등급 인증에 적용하였으나, 물리적 측정을 통해 기본모델의 인증을 받은 기업만이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파생모델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규제를 받고 있음
- 해외에서는 객관적인 조건을 적용하여 ISO 15099 규정에 따른 시뮬레이션 계산 값으로 창세트의 단열성능을 인증

※ (사례H사) 유리생산업체 H사는 창세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획득을 위하여 모델 하나당 성능시험비 700백만원, 3개월 이상의 대기 시간 소요, 일반적으로 인증을 받아야하는 모델이 수십 개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소요 시간 및 비용 문제가 심각함

□ 건의내용

- 창세트의 기본모델을 실측과 시뮬레이션 방법, 둘 다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

2. 방폭 전기기계 안전인증 규제 완화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 2

□ 현황 및 문제점

- 방폭 지역에 사용하는 전기기계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내 인증 외에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IECEX의 인증을 받은 경우만을 인정하고 있음

□ 문제점

- 북미, 유럽에서 안전인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분 인정으로 시험 및 검사업무가 추가되어 비용이 발생하고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설비 개선 및 신·증설 투자 지연을 초래하고 있음
- 해외에서 안전인증된 품목에 대한 국내 재인증 요구는 기업에 비용을 증가시키는 불필요한 규제
 - 안전인증 수수료는 방폭 단일형식, 단일 품목인 경우 국내 최대 200만원 이내(국외 최대 300만원 이내)의 비용이 발생하며, 품목이 추가될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함
 - 방폭인증 처리기간은 국내 제조품의 경우 105일, 외국제조품의 경우 135일이 소요됨
 - 방폭구조형식에 따라 시험 진행을 위하여 시험품에 따라서 수량이 추가될 수 있음

- 기업의 설비 개선 및 신증설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해외에서 안전 인증된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을 면제할 필요가 있음

<방폭 전기기기의 규격체계>

사용지역	규격명	비고
국 내	노동부 고시 KS C IEC 60079-0, 1, 2, 5, 6, 7, 11 : 2001	
국제규격(IEC)	IEC 60079-0~19	
북 미	NFPA ISA(Instrument Society of America), UL, FM CSA(Canadian Standard Association)	
유 럽	CENELEC, EN	

※ (사례E사) 전자재료용 특수가스 제조업체 E社(연매출액 1,300억, 종업원 170명)는 업종 특성상 산업용 초정밀 저울을 사용하는데, 국내 제작업체가 없어 해외에서 수입해서 사용. 그러나 해외 제조업체는 국내 수요가 작아 방폭 안전인증을 받지 않으려고 함. 결국 수입업체가 이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방폭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설비 개선 및 신증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건의내용

- 해외(북미 : NFPA ISA·UL·FM·CSA, 유럽 : CENELEC·EN)에서 안전인증된 제품에 대하여 국내 인증 면제

□ 법령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현 행	건의(안)
제58조의2 ②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이 법 제34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한 정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면제한다. 1.~5. 생략	제58조의2 ② 생략 1.~5. 생략 6. 북미에서 인증 받은 NFPA ISA , UL, FM, CSA 혹은 유럽에서 인증받은 CENELEC, EN의 경우<신설>

3. 축산물 친환경 인증 통합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동물보호법」 제29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 현 황

- 축산물 및 동물 관련해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친환경축산물인증(유기농산물 및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동물복지인증, 환경친화축산농장 등이 있음



□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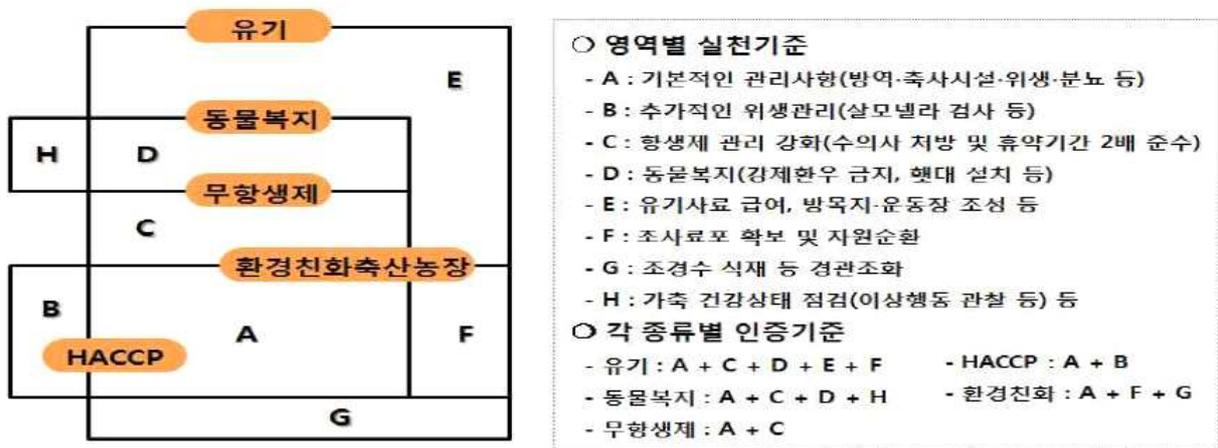
- 축산물 및 동물 관련 친환경인증 수가 많아짐에 따라 인증 취득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증기관이 각각 달라 전문가 조언 및 컨설팅과 인증에 어려움이 따름

- 친환경인증은 5가지가 있으나 법적 근거가 서로 다르고 인증체계가 복잡

<축산물 관련 친환경인증 비교>

구 분	관련법률	인증기관	인증수수료
친환경축산물 - 무항생제 축산물 - 유기축산물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단체	
HACCP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요소중점관리기준원	20만원 + 출장비
환경친화축산농장	가축분뇨법	농림축산식품부	수수료 없음
동물복지축산농장	동물보호법	농림수산검역본부	10만원 + 출장비

<축산물 관련 친환경 인증체계>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 '14.1.16

- 친환경축산물 인증 건수는 급증하고 있으며 인증부담 또한 증가

<친환경축산물 인증 현황>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6월
건 수(건)	18	53	465	1,172	2,056	3,446	3,694	4,523	6,465
농가호수(호)	18	68	763	2,904	4,441	6,265	6,697	7,801	10,399
사육두수(천두)	45	197	18,103	38,769	60,357	86,348	93,857	114,669	128,067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전면개편” 보도자료, '13.10.24

※ (사례H사)

- H사는 축산업종에 종사하는 중견기업으로 친환경 축산 관련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복된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시간과 인력 투입이 필요하여 부담이 되고 있음
- 채소절임식품 제조업체 E社(연매출액 18억, 종업원 18명)는 HACCP인증 획득(18개 품목) 및 운영에 1억 이상, 전통식품 품질인증 획득 및 운영에 30백만원 이상 소요 → 구체적으로, 기업현황과 문제점이 부각되도록 작성

□ 건의내용

- HACCP, 친환경 축산물 인증(유기축산물·무항생제 축산물), 동물복지 등 친환경인증 제도를 통합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해야 함

4. 가금류 도축 검사공영화 제도 개선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 현 황

- 현재 닭·오리의 경우 도축업 영업자가 고용한 수의사가 도축검사를 시행했으나 금년 7월 1일부터 닭·오리의 도축 검사 공영화 시행으로 공무원인 검사관이 수행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관을 보조할 검사원을 채용할 수 있음

<검사 공영화 제도 시행 시기 및 기준>

시행일	도축장에 대한 개정 규정
2014. 7.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마리 초과 도축장
2015. 1.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 도축장
2016. 1.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 도축장

<공영화에 따른 검사관 수 및 기준 업무량>

인원 수	검사원 일일 도축두수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 기준 업무량
1명 이상	2만 5천 수	5만 수 이하
2명 이상	~5만 수	~10만 수 이하
3명 이상	~7만 5천 수	~15만 수 이하
4명 이상	~10만 수	* 1명 추가시 닭 15만 수 추가 산정
6명 이상	10만 수 초과	

* 시행령 제17조의 2 [별표1]

□ 문제점

- 현재까지는 계육 업체에서 자체 책임수의사 고용을 통해 자체 검사를 실시했으나 검사공영화 시행에 따라 검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

- 검사공영화로 인해 검사관 신분은 공무원이어야 하며, 이에 따라 공무원 수의 증가 및 국가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
 - 법 개정 논의 당시 검사공영화로 인한 5년간 추가 재정 소요액은 약 140억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제도가 2014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당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연도별 도축검사관 및 검사원 채용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검사관 채용	2,080	2,856	4,763	5,001	5,251	19,951
검사원 채용	1,034	2,131	4,308	4,437	4,570	16,480
닭·오리 수수료 수입	2,288	3,025	5,282	5,700	6,157	22,452
합 계	826	1,962	3,789	3,738	3,664	13,979

- * 연간 닭·오리의 도축 두수는 '11년 기준으로 닭은 연간 6%, 오리는 13% 증가를 가정함
- * 자료 : 보건복지위원회,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 '13.6월

- 또한 대부분 도계장이 검사가 불가능한 구조로 검사 장소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며, 도계라인 스피드(8,000수/H)가 빨라 라인에 대한 개선이(디바이더 등) 진행되지 않고서는 검사 공영화 당위성을 확보할 수 없음

□ 해외사례

- 한국처럼 검사관과 검사보조 업무를 담당할 검사원을 공무원으로 두는 국가는 없음
 - 미국은 USDA에서 Shift당 수의사 1명이 파견, 검사보조원(업체 소속)이 디바이더 설비를 통한 분당 35수 적용한 전수 검사 체계 운영
 - EU도 Shift당 수의사 1명이 파견되고 검사 보조원에 대한 수와 분당 검사량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나 보통 30만수에 2명의 검사보조원을 운영
 - 일본은 검사관은 정부 파견 수의사로 검사량은 정해지지 않으며, 검사 보조원은 회사에서 고용되거나 정부에서 인증한 공장의 검사원을 운영

<주요국의 가금류 도축 검사제도>

미국·캐나다	EU	일 본	한 국
감독 수의관(정부) 검사원(정부) 보조원(업체)	검사관(정부) 검사원(정부, 일부 업체)	검사관(지자체) 검사원(업체)	검사관(정부) 검사원(정부)
35수/1인/1분(미) 27수/1인/1분(캐)	검사에 적절한 속도 유지	35수/1인/1분	52수/1인/1분*

* 한국은 검사원 일일도축 수 2만 5천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값

□ 건의내용

- 국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닭·오리 검사공영화 제도 폐지

5. 도축 검사원 자격기준 폐지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현 황

- 검사원은 검사관을 보조하는 인력으로 그 자격은 수의학·축산학·식품학·생물학 분야의 학과 졸업생,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 축산물 위생 관련 1년 이상 종사자로 규정

문제점

- 검사원은 도축 검사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들의 주 업무는 일반인도 수행할 수 있는 결함육 판정 및 보조업무 등인데 그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건의내용

- 검사원의 자격 기준 폐지

VII. 주택·건설

1. 보증기관의 면책채권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

□ 관련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 현 황

- 통합도산법은 기업이 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기업은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 그러나 현실에서 일부 보증기관들은 법원에서 권리관계가 종결된 면책채권 변제를 강요하거나 면책을 이유로 보증을 거절하고 있어 법인의 정상화가 어려우며, 심지어 계열기업의 보증거래까지 거절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보증거절 또는 보증차별 유형>

유형 I

면책된 채무 미상환 ⇨ 해당 기업 보증거절

(건설공제조합,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

유형 II

면책된 채무 미상환 ⇨ 계열사까지 보증거절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

※ (사례유형1) S건설은 회생절차 중에 법원의 인가를 받아 M&A를 통해 정상 기업으로 환원되었으나, 보증기관에서는 면책채무를 추가 변제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수용치 않자 보증거래 거절함

※ (사례유형2) A그룹 계열 S사는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A그룹 계열사인 Y사(법원의 인가를 받아 M&A를 통해 A그룹에 인수된 기업)가 면책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서 발급을 거절했으며, S사는 보증을 받지 못해 임대주택사업을 포기

□ 건의내용

- 면책 또는 소멸된 담보권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법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국회 통합도산법 개정안(김동철 의원안 / 2012.12.24.발의) 계류 중
- 주요 내용 : 회생절차나 면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2.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발주시 중복성 심사 일원화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안)」 제75조(14.5.23 시행, 構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64조)
- 국토교통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44호)
- 지자체 계약심사업무처리지침 제3조

□ 현 황

- 발주청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설계VE)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 각 지자체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계약원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문제점

-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수주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계VE 검사를 받고 해당 지자체에서 다시 계약원가 심사를 받고 있는데,
 - 설계VE나 계약원가 심사 모두 공사금액과 관련된 부분으로 중복 심사로 인해 기업의 행정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심사 및 검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공사발주가 지연되고 있음

□ 건의내용

- 공공기관의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시 중복성 심사 일원화

3.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중복규제 완화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 현 황

-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하 엔지니어링법)」에 따라 일정기준을 갖추고 신고할 경우 엔지니어링업의 하위영역인 건설공사 기술용역을 수행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추가 등록을 해야 함

* 「건설기술관리법」을 2013년 전면개정 하면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규정을 마련해 '14.5.23부터 시행

□ 문제점

- 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상 등록 없이도 건설공사 기술용역을 수행할 수 있었으나, 개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으로 인해 건설공사 기술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가 등록이 필요해 중복규제에 해당

□ 건의내용

- 건설기술진흥법에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예외 조항 마련

□ 법령개정(안)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현 행	건의(안)
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 ⑦ 생략 <u><신설></u>	제26조 ① ~ ⑦ 생략 ⑧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u>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 된 경우에는 건설 기술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신설></u>

VIII. 기 타

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정의 명확화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관련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 4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25호)

현 황

- 「SW산업진흥법 시행령」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대기업으로 규정하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을 두고 있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금액의 하한>

구 분	초기 중견기업	대기업	
		매출 8천억원 미만	매출 8천억원 이상
사업금액	20억원 이상	40억원 이상	80억원 이상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문제점

-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중견기업은 공공시장 참여 제한으로 인해 중견기업 성장 후 판로가 제한되고 있음
- 2014년 공공SW구축 사업 6,571건 중 97%가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으며, 초기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비중은 3%에 불과함

<공공 SW구축 사업 수 및 사업금액>

(단위 : 개, 억원, %)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사업수(비중)	사업금액(비중)	평균	사업수(비중)	사업금액(비중)	평균	
전체	6,077	22,920	3.8	6,571	25,711	3.9	2,791
80억원이상	37(0.6)	7,948(34.7)	215	35(0.5)	9,320(36.2)	266.3	1,372
40억~80억원	52(0.9)	2,868(12.5)	55.2	50(0.8)	2,862(11.1)	57.2	-6
40억원미만	5,988(98.5)	12,105(52.8)	2.0	6,486(98.8)	13,529(52.6)	2.1	1,424
20억~40억원	102(1.7)	2,824(12.3)	28	115(1.8)	3,207(12.5)	27.9	383
20억원미만	5,886(96.9)	9,281(40.5)	1.6	6,371(97.0)	10,322(40.1)	1.6	1,041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 공공부문 SW사업 수요예보 조사 결과", '13.3.13

- 외투법인 중소기업은 공공SW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 국내 기업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
 - 국내기업은 기업 규모가 작아도 관계기업제도 시행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지만, 다국적기업이 해외지사를 통해 설립한 외투법인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어 공공SW사업에 참여가 가능함

※ (사례A사) A사는 주력제품인 PACS(Picture Archiving & Communication System) 전형적인 의료+IT 융합 package SW로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KFDA 인증이 필수임. 국내 PACS 시장 중 국공립병원 및 보건소, 군 등은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SW산업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중견기업의 입찰 참가가 제한. 국내기업 중 대형병원의 PACS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곳은 없으며, GE와 같은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지사는 중소기업 적용을 받아 입찰을 할 수 있음에 따라, 국내 시장 잠식이 우려

□ 건의내용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기준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으로 명확화

□ 법령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4>

현 행	건의(안)
제17조의4(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한다.	제17조의4(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 한다.

2. 방화구획 설치 완화 규정 구체적 명시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14조

□ 현 황

- 화재 발생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10층 이하 층의 경우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 마다 방화구획 설치가 의무화 됨
- 공장과 창고의 경우 물품의 제조, 가공, 보관,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만 방화구획 설치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문제점

- 방화구획 설치 관련 법령 해석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어 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우며, 건축비 증가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
- 국토교통부는 '10.6월 “창고 내에 랙(물품적치를 위해 사용하는 진열대, 선반 등)이 물류업무 수행에 불가피하게 설치되는 경우에는 방화구획 적용이 제외 된다”는 유권해석을 전국 시·도에 시달하고, 일부 시·군·구는 고정식 랙 설치시 방화구획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 '13.11월 “대형재난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원 감사에서 방화구획의 미설치 또는 완화 설치가 대형화재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 국토교통부는 '14.1월 “공장 및 창고의 방화구획 적정여부 및 시정조치사항”을 발표했으며, 전국 지자체는 관련 법령 해석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음
 - 고정식 랙이 설치되어 방화구역 설치가 곤란한 부분을 제외한 랙이 설치되지 않은 공간(랙과 랙 사이 작업통로 등) 등에는 방화구역 설치
 - 고정식 크레인 작업(이동)구간을 제외한 지게차 등의 이동식 물류설비 작업공간에 방화구역 설치
- 동일 유형의 제품들을 보관하는 고정식 랙이 설치된 창고 중 1천㎡가 넘는 창고는 구획해서 창고 내 방화벽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방화벽이 설치된 공간 및 그 주변 공간의 공간 효율적 활용이 불가능
 - 방화벽 설치시 지게차 이동 통로를 추가 설치해야 하므로 방화벽을 사이로 약 3.5m(지게차 통로+방화벽체) 공간을 잃게 되어 공간 활용률 저하
- 방화 벽체 건축비, 냉동기 설비비, 방열문등 건축비가 추가 상승하고, 동일 장소를 나누어 구획, 관리함으로써 이동작업이 길어지며 이중 관리에 의한 관리 효율(생산성)이 저하됨

□ 건의내용

- 방화구역 설치 완화 규정 구체적 명시

□ 법령개정(안)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현 행	건의(안)
<p>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u>설비의 설치를 위하여</u>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3. ~ 7. 생략 	<p>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u>설비(고정식 랙 또는 크레인 설치)의 설치와 작업을 위하여</u>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3. ~ 7. 생략

3. 관계기업제도 적용 완화

□ 소관부처 : 중소기업청

□ 관련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제7조의4

□ 현 황

- 특정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여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진 경우, 지배·종속의 관계로 규정하고 이들 기업을 서로 독립된 기업이 아닌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는 관계기업제도가 존재
 - 계열사를 흡산할 경우 대기업 수준의 시장지배력을 갖는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시켜 기업의 인위적 분사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문제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 개정을 통해 관계기업제도로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부여(2015년 시행)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기적용 기업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인위적 분사 목적이 아닌 신기술개발 등의 투자목적인 경우에도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됨에 따라 관련 성장지원 대상에서 소외

※ (사례Y사)

- 반도체 제조용 기계 및 장비제조업을 영위하는 Y사의 경우 관계기업제도로 인해 유예기간 없이 바로 중소기업을 졸업하였고 업종의 특성상 기술개발 투자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율이 낮게 적용되어 신규투자에 소극적
- 중소기업시 영위한 청년근로자 소득세 감면혜택도 갑자기 사라져 우수인재 유치에도 어려움 발생

□ 건의내용

- 관계기업제도에 따라 기 졸업한 기업(2015년 이전 적용기업)도 중견기업 진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을 통한 유예기간 부여 필요

4. 에너지 사용제한 규제 완화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2항의 9, 동법 시행령 제14조,
-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 현 황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에 따라 동절기와 하절기에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업부문은 이를 준수해야 하며, 하절기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시 전기 사용자의 매 시간별 전기사용량은 시간별 전기사용상한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음
(시간별 전기사용상한량(kW) = 기준사용량 × (1 - 의무감축률))

* 기준사용량(CBL:Customer Baseline Load) : 전기사용자별로 공고일 직전 10일간의 정상 영업일(토·일·공휴일 제외)을 대상으로 규제 시간대별로 측정된 전기사용량 중에서 최대 2일, 최소 2일을 제외한 6일의 규제 시간대별 평균 전기사용량을 산출한 후, 2012년 6월 대비 2012년 8월 정상영업일(토·일·공휴일 제외)의 규제 시간대별 평균 전기사용량 증감 비율을 곱한 값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구 분	제한대상	제한내용
대규모 전기 사용자 사용제한(8.5~8.30)	- 계약전력 5천 kW 이상	- 피크시간대(10~11시, 14~17시) 전기사용량 부하 변동율에 따라 3~15% 의무 감축
건물의 냉방온도 제한 (6.18~8.30)	- 계약전력 1백 kW - 2천toe 이상 에너지 다소소비건물 - 공공기관	- 실내온도 26℃ 이상 유지 * 공공기관 28℃ 이상
문 열고 냉방영업금지 (6.18~8.30)	- 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점포, 상가, 건물 등	-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냉방기 순차운휴 실시 (6.18~8.30)	- 공공기관 - 2천toe 이상 에너지 다소소비건물	- 피크시간대(오후14~17시) 권역 별 냉방기 순차운휴(상시)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13년도 하계 에너지사용제한 공고

□ 문제점

-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기간 내 대규모 집중 물량 생산이 필요한 회사의 경우 기준사용량 선정이 불리하게 이루어져 전기 사용 제한으로 부담 가중
 - 또한 에너지 사용 제한시간대를 피하기 위하여 작업시간을 야간시간대로 전환하여 생산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되고, 기타 생산계획을 수정하거나 과태료를 불사하고 생산을 하는 불합리 발생

※ (사례K사) K사는 주문생산 수출기업으로 보편적으로 생산물량이 매년 하계 6월~8월, 동계 12월~익년 2월 기간으로 집중되어 있음. 이 시기에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가 있어 해당 시간대를 피하여 작업하거나 야간 작업이나 휴일 철야작업을 진행하여 비용이 막대하게 투입되어 경영상의 부담이 막대함.

※ (사례H사)

- 도계가공공장을 운영중인 H사는 업종 특성상 매년 6월 중순부터 9월까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력 소비량도 함께 증가. 전력소비량의 70%는 닭고기 품질 유지를 위한 냉동·냉장창고 운영에 사용중.
- 생계(生鷄)가 하절기 무더위로 폐사할 가능성이 높아 조업 시간 조정이나 전력사용량 감량은 불가능한 상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적용 출하제품 온도 4℃이하, 작업장온도 15℃이하 관리)
- 여름철 절전규제 달성을 위해 생산량 감소 시 당사 이외에 관련업계 성수기 매출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공급량 감소로 인한 단가 인상으로 계육 시장 침체와 소비 시장 위축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음.

□ 건의내용

- 동절기와 하절기에 생산물량이 집중되는 수출기업 및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예외 범위를 설정하거나 의무감축률 하향 조정 및 전력사용량 기준 값 설정

5. 선원 승하선 공인시 민간보험 가입자 차별대우 시정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관련법령 : 「선원법 시행령」 제32조

□ 현 황

-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재해보상 및 임금채권보장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을 해야 함

□ 문제점

- 선원법 시행령상 보험가입시 민간보험이나 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보험선택권을 제한
 - 항만청 선원 승선 공인 신고시 보험서류(선원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를 제출해야 하는데 공제에 가입한 경우 서류 확인만 하는 반면 민간보험에 가입한 경우 까다로운 심사확인 등 차별대우를 통해 선주의 보험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음

※ (사례A사) A사는 선원 승선 공인 신고시 항만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민간보험보다 20~30%정도 비싼 공제보험을 가입할 수밖에 없었음(공제보험 보험료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민간보험의 보험료 100만원)

□ 건의내용

- 선원 승선 공인 신고시 민간보험에 대한 차별대우 시정을 통해 선주의 보험선택권 확대

6. 수출품목에 대한 법규준수도 평가기준 완화

□ 소관부처 : 관세청

□ 관련법령

-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 현 황

- 관세청은 신고납부제하에서 기업의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통관 및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법규준수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 수출입 검사 및 절차간소화, 납세유예, 수출 담보제공 특례, 각종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법규준수도는 수출입 관련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를 유도하고 '관세 행정 전반에 대한 법규준수도를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며, 그 운영개요는 아래와 같음

<법규준수도 운영개요>

- 측정대상 기간 : 최근 8분기(2년)
- 측정 주기 : 매 분기, 최근 8분기 실적 데이터를 기초로 측정
- 측정 항목

산식 : 기본점수(99점) - ①신고정확도 감점요소 - ②위반사항 감점요소 + ③가점요소

- ① 신고정확도 감점 요소: 정정, 취하, 각하 등
- ② 위반사항 감점 요소: 세액 정정·추징, 범칙, 행정 제재 등
- ③ 가점 요소: 표창,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 등

* 자료 : 관세청, 『성실신고 안내 가이드라인』, 2012

- 법규준수도 우수 기업은 수출입 검사 및 절차간소화, 납세유예, 수출 담보제공 특례, 각종 편의제공 등 다양한 혜택 부여하고 있음
 - 예를 들어 AEO 공인기업의 경우 특례 규정을 두어 법규 위반시 처벌·과태료·과징금 경감, 성실납세자 납세유예, 수출입화물 우선 심사, 수출입 검사 및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문제점

- 법규준수도 측정은 기본점수에 감점요소와 가점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하는데, 관련 법령은 수입신고에 대해서는 잠정가격제도를 두고 있으나 수출신고에 대해서는 잠정가격신고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수출신고 정정시 법규준수도가 하락하게 되어 수출기업이 불이익을 받고 있음
 - 이에 따라 수출을 하면 할수록 수출신고 정정에 따른 법규준수도 하락으로 수출 담보제공 특례 지정 취소 등 수출입시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가격변동이 커 수출신고 정정사유가 빈번히 발생하는 원재료와 같은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법규준수도 평가시 신고정확도에서 제외하여 감점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례N사)

- 동관 및 황동관 제조업체 N사(연매출액 3,993억, 종업원 수 325명)는 수출이 전체 매출의 54.5%(2,178억원)를 차지하고 있음
- 동 산업은 원재료이기 때문에 가격변동이 심하여 판매 후 즉, 통관 후에 가격이 확정되어 매출액이 결정되므로 관세청에 수출신고시 정정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함
- 그러나 수출신고를 정정할 경우 법규준수도가 하락하며, 법규준수도가 70점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수출 담보를 제공하거나 관세를 사전납부 해야 하는 등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건의내용

- 법규준수도 측정시 수출신고 정정에 대해 감점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 법령개정(안)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

현 행	건의(안)
<p>제6조(평가내용) 관세청장은 제5조에 따른 수출입관련 이해 당사자에 대해 수출입공급망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통합 법규준수도를 평가한다.</p> <p>1. 수출입관련 법령 등에 따라 세관에 신고·신청·제출·보고한 사항 등에 대한 정확성과 적정성(이하 "신고정확도"라 한다)</p> <p>2. 수출입관련 법령의 위반 또는 불이행 등으로 세액 등의 추가납부, 과태료·과징금·통고처분·벌금 부과, 행정제재 등을 받은 실적(이하 "중요사항위반 평가실적"이라 한다)</p> <p>3. 관세행정에 대한 협력, 세관업무에 대한 협력 등 실적(이하 "관세협력도"라고 한다.)</p>	<p>제6조 (평가내용) 관세청장은 제5조에 따른 수출입관련 이해 당사자에 대해 수출입공급망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통합 법규준수도를 평가한다.</p> <p>1. 수출입관련 법령 등에 따라 세관에 신고·신청·제출·보고한 사항 등에 대한 정확성과 적정성(이하 "신고정확도"라 한다) <u>다만, 원자재 등과 같이 가격변동이 큰 수출 품목의 경우 신규정확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개정></u></p> <p>2.~3. 좌동</p>

7. 축사용 가스난방기기 수입절차 간소화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현 황

- 외국에서 수입한 축사용 가스난방기기를 양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 결과서 등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문제점

- 축사용 가스난방기기 수입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우며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 소요되어 사실상 가스용 난방기기 수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과잉규제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2013년 3월 개정에 의하면 법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기간과 5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어 모든 수입업체에서 수입을 포기한 상태
 - 현재 수입 가스난방기를 사용하고 있는 농장 경우 당장 A/S 및 추가 구매가 어려우며, 나머지 농장에서도 가스난방기 수입이 막혀 어쩔 수 없이 비효율적인 등유 열풍기를 사용해야만 하는 실정
 - 이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농가의 사육 경비 상승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며, 고효율의 가스 난방기기 사용이 어려워 국가적으로도 에너지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 (사레H사) 양계, 축산물 가공 판매 및 사료 제조업체 H사는 동 규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유 열풍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열효율이 낮고 등유에 비해 가스에 가격 높아 난방비 지출이 30~50% 증가했으며, 열풍기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축사는 항상 크고 작은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건의내용

- 에너지 절감을 위해 수입 축사용 가스 난방기기에 대하여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절차 폐지

8. 초기 중견기업, 지방자치단체 육성기금 지원 확대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 현 황

- 1994년부터 지방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기금 운영

<2014년 지방자치단체자금 지원>

지역	자금	지원 규모	신청기관	지역	자금	지원 규모	신청기관
서울	중소기업 육성기금	2,000억	서울신용보증재단	경기	시설투자사업 외	1조원	경기도청 외
부산	중소기업 육성자금	1,400억	부산경제진흥원		경영안정지원자금	1,000억	
	중소기업 운전자금	1,600억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	700억	
	소상공인자금	200억		강원	특수목적자금	300억	강원도청
대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000억 (상반기)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	충북	경영안정지원 외	2,400억	충북중소기업 종합센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300억 (상반기)		충남	경쟁력강화자금 외	5,000억	충남 기업지원과
인천	경영안정자금	6,500억 내	경제통상진흥원	전북	경영안정자금	600억	경제통상진흥원
	구조고도화자금	800억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350억	
광주	중소기업 육성경영안정자금	2,000억	경제고용진흥원	전남	소상공인 창업자금	100억	전남중소기업 지원센터
대전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300억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운전자금	7,454억	경북기업 노사지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500억		경북	창업경쟁력강화사업	1,200억	경북경제진흥원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78억			경영안정자금	2,000억	
울산	경영안정 및 기술혁신자금	178.1억	울산경제진흥원	경남	시설설비자금	3,000억	경남기업 지원센터
세종	경쟁력강화자금 외	350억	세종시 지역경제과	제주	경영안정자금 외	3,000억	제주 지역경제과

*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 중소기업 지원제도'

□ 문제점

- 지자체 육성기금이 중소기업만 해당되거나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초기 중견기업은 공장이전이나 사업 확장하려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특히, 지방으로 공장이전이나 사업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함에 따라 자금지원이 절실
- 중견기업은 고용 및 세수면에서 지역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초기 중견기업에게 지원 확대 필요

□ 건의내용

- 중견기업(초기 중견기업)도 자금지원 대상에 포함

9. 부산신항만 부두내 벌크선 접안 부두 설치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부산지방해양항만청)

□ 현 황

- 부산의 항만부두 중에는 현재 대용량의 벌크선을 접안할 수 있는 부두가 전무한 실정

* 부산신항만부두는 초기 다목적부두로 계획되었으나 컨테이너 전용으로 용도변경

□ 문제점

- 현재 Plant용 설비 등 제품의 대형화가 이루어지는 추세이나, 제품의 수출을 위한 벌크선 항구가 존재하지 않아 기업들의 높은 물류비용 발생
 - 부산신항만은 다목적부두용으로 계획 되었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컨테이너 전용으로 용도변경 되었음
 - 정부의 정책 비일관성으로 기업의 물류비용이 급증한 사례로 이를 기업에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부산 신항만을 컨테이너 중심 항구로 운영하더라도 최소한 벌크선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를 건설할 필요가 있음

※ (사례B사) Plant용 설비를 생산·판매하는 업체 B사(연매출액 796억, 종업원 183명)는 제품의 해외수출을 위해 벌크선 항구가 존재하는 창원, 마산, 울산 등으로 바지선을 이용하여 운송 후 벌크선에 다시 선적하여 수출함에 따라 높은 물류비용 발생

□ 건의내용

- 부산신항만에 컨테이너 중심으로 운영하더라도 벌크선이 입항할 수 있는 부두 개설